

2009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 明代 상품경제의 발달과 里甲制의 해체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손 경 준

# 明代 상품경제의 발달과 里甲제의 해체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Economy  
and the Dissolution of Lijiazhi in the Ming Dynasty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손 경 준

# 明代 상품경제의 발달과 里甲制의 해체

지도교수 : 최진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손 경 준

손경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성 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진 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속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SCT.....	i
I. 머리말.....	1
II. 里甲制의 성립.....	3
1. 明初의 토지정책.....	3
2. 里甲制와 里老人.....	9
III. 상품경제의 발달.....	18
1. 상품경제의 발달.....	18
2. 稅役의 銀納化.....	25
IV. 里甲制의 해체.....	32
1. 一條鞭法.....	32
2. 均田均役法.....	40
V. 맺음말.....	45
참고문헌.....	49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Economy and the Dissolution of Lijiazhi in the Ming Dynasty

Son, Kyoung-jun

Advisor : Prof. Choe Chin-kyu, Ph.D.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most marked thing in social and economic change in the Ming Dynasty was the development of a monetary economy with a silver standard. In the Song Dynasty, coins were usually used and paper money titled Jiao-chao(交鈔) was distributed. And In the Yuan Dynasty, paper money was also circulated. However, it returned to natural economy due to the peasants' revolt at the late Yuan Dynasty, and at the early Ming Dynasty, the principle that goods or labor force were paid for tax was created.

In the early Ming Dynasty, coins and paper money were mainly used according to the currency policy. The paper money was called Da-ming-bao-chao(大明寶鈔) and the use of gold and silver for its circulation was strictly prohibited by law, but the price of Bao-chao(寶鈔) gradually decreased. Therefore, use of silver was expanded against the prohibition rule by the government. So, using the payment of wages of officials in silver as a chance in the first year

Zheng-tong(正統元年,1436),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expansion of the silver economy, and finally authorized the payment of silver for tax and silver currency.

However, silver payment of tax was an important economic change and big social problem for farmers. As silver was being circulated in Jiang-nan(江南) where the production of commercial goods was popular, silver could be easily secured, but in others areas, farmers had to be responsible for securing silver for themselves. Therefore, they had to develop new productive activities such as side-jobs and cultivation of commercial crops.

The status of silver as a means of currency was established and its use was circulated, but as production of silver in China was not much, most of the silver needed had to be imported. Enormous amount of silver was imported through trades with many European countries from the middle 16th century. Nation-wide circulation of silver currenc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labor system. That is, according to the Liang-shui-fa(兩稅法) which was being implemented from the Tang Dynasty, natural tax was paid through rice, barely and raw silk, but since the Xuan-de for a year(宣德年間, 1426-1435), all of it was paid in silver.

For the labor system of the Ming Dynasty, as there were a few miscellaneous services in addition to Li-jia-zheng-yi(里甲正役) imposed on Li-jang-hu(里甲戶) and Jia-shou-hu(首甲戶), farmers had big burden, which was aggravated as time went. Labor tax(徭役), labor had to be provided in the beginning, but silver payment began as silver was circulated. As the circulation and penetration of silver economy was combined with the ruler's desire for silver, Yi-tiao-bian-fa(一條鞭法) that silver was used for tax was implemented, which reflected the change of

social economy to tax system. Yi-tiao-bian-fa(一條鞭法) had a close relation with the circulative process of silver currency in Ming Dynasty. That is, the prototype of this system was found in Jia-jing for a year(嘉靖年間, 1522-1566), but as it began to consider the conditions of each region via the Long-qing for a year(隆慶年間, 1567~1572) and Wan-li for a year(萬曆年間, 1573~1620), it was circulated nationwide.

The Yi-tiao-bian-fa(一條鞭法) was a tax reform by which complex labor and tax system was reorganized for efficient taxation and less burden to the public. So, each item in Land tax(田賦) based on the ownership of land was incorporated with that of Labor tax(徭役)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which was the base of silver taxation. In particular, the Yi-tiao-bian-fa(一條鞭法) reflected new relations between landowners and laborer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grand landownership and commercial production, was changed into Di-ding-yin-zhi(地丁銀制) in the Qing Dynasty.



## I. 머리말

명대의 賦役制度는 향촌자치조직인 里甲制度를 통해 운영되었다. 이갑제는 110戶를 1리로 하여 人丁수와 자산의 등급에 따라 호등을 구분하는 戶等原則에 입각하여 각 里에 소속한 각 戶에게 토지세와 해당년도의 徭役을 부과시키는 체제이다. 이 조직은 향촌의 자치조직으로서 향촌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을 자치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이갑제가 향촌에서 처리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부역제도를 잘 수행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갑제의 변화는 부역제도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명 중기 이후가 되면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치력 약화로, 관리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부에서는 토지와 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게 되면서 부역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이는 힘없는 농민에게 전가되어 자작농뿐만 아니라 里長戶·糧長戶마저 몰락하면서 농촌의 계층분화현상이 촉진되었다. 또한 田賦와 徭役이 점차 은납화로 바뀌면서 요역에 대한 부담기준과 부과대상을 戶口에 할 것인지 아니면 人丁수에 또는 토지에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역제도의 변화가 시작된다.

특히 명 말기 一條鞭法이 시행될 당시에는 각 戶口가 담당해 왔던 均徭役의 징수는 거의 모두 은납화로 전환되었고 人丁과 토지의 다과에 따라 부과되었다. 하지만 신사층의 優免特權과 그로 인한 부정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이갑체제의 불균등성이 심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均田均役法이 시행된다. 이는 田賦와 徭役을 일괄적으로 토지에 근거하여 징수한 것으로, 이갑제의 징수기준인 호등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갑제가 그 의미를 사실상 상실했음을 말한다.<sup>1)</sup>

이런 명대 향촌통치에 관한 연구는 명대 사회·경제사 영역에서 매우 오래된 주제 가운데 하나로서 여러 각도에서의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명 중기인 15세기 중엽에서 청 초기에 걸친 부역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갑제의 이완되어가는 과정을 다룬 연구<sup>2)</sup>가 중심이 되며, 이에 따른 향촌사회의 변모에 대한 연

1) 金鍾博, 「明末 清初期 里甲制의 廢止와 保甲制의 施行」, 『中國史研究』 19, 2002, pp.159-202.

2) 金鍾博, 「明代 一條鞭法의 成立過程」, 『史學誌』 15, 1981; 同, 「明末 均田均役法과 그 實施背景」,

구,3) 이갑제 하에서 里長과 더불어 지배층으로 활동한 里老人과 糧長層에 대한 연구,4) 명대의 사회계층과 신사의 향촌 지배에 대한 연구,5) 그리고 명대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특정 지방에 관련된 사료를 통해 살펴본 연구6) 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를 통해 이갑제가 변화되는 과정과 원인을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특히 16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유럽과의 교역으로 중국으로의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되면서 은화가 전국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상품경제의 발달이 촉진된 점을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명 왕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명초의 토지 정책과 이갑제의 성립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상품경제의 발달과 세역의 은납화, 그리고 일조편법과 균전균역법의 시행을 통한 부역제의 개혁으로 이갑제가 해체되는 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 
- 『東洋史學研究』 43, 1993; 同, 「明代末期 里甲制의 性格」, 『祥明女大論文集』 15, 1985; 同, 「明末 清初期 里甲制의 廢止와 保甲制의 施行」, 『中國史研究』 19, 2002; 同, 「明代 賦役制度의 變遷過程과 國家構造」, 『人文科學研究』 5, 1996; 同, 「明代 田賦의 銀納化 過程에 관한 考察」, 『史叢』 19, 1986; 宋正洙, 「明 嘉靖時期的 社會狀況과 保甲制의 展開」, 『明清史研究』 24, 2005; 同, 「明末 清初의 鄉村 統治制度의 變遷」, 『學林』 5, 1983; 李敏鎬, 「明代 鈔關稅의 徵收推移와 性格 變化」, 『中國史研究』 21, 2002 등 참조.
- 3) 吳金成, 「明末·清初의 社會變化」, 『講座中國史』 IV, 1989; 同, 「明 中期의 人口移動과 그 影響; 湖廣 地方의 人口流入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137, 1993; 鄭炳喆, 「明 前·中期 山東의 人口移動과 社會 變化」, 『東洋史學研究』 55, 1996 등 참조.
- 4) 金鍾博, 「明代 糧長制의 研究」, 『史學誌』 16, 1982; 李承局, 「明代 糧長의 設置와 그 性格」, 『慶北史學』 7, 1984; 金漢植, 「明代 里老人制의 研究」, 『大邱史學』 1, 1969; 金仙德, 「明 前期 里甲制 下의 訴訟處理 -徽州文書를 中心으로-」, 『明清史研究』 18, 2003 등 참조.
- 5) 吳金成, 「明·清 王朝交替와 紳士」, 『中國學報』 43, 2001; 同, 「國法과 社會관행 -明代의 紳士 優免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197, 2005; 同, 「明代 紳士層의 形成過程에 대하여」, 『震檀學報』 48, 1979; 同, 「明清時代의 國家權力과 紳士」, 『講座中國史』 IV, 1989; 同, 「1607年의 南昌教案과 紳士」, 『東洋史學研究』 80, 2002; 同, 「明代 陽子江中流 三省地域의 社會變化와 紳士」, 『大邱史學』 30, 1986; 同, 「明清時代의 無賴; 研究의 現況과 課題」, 『東洋史學研究』 50, 1995; 李啓命, 南成勳, 「北朝의 貴族과 明代의 紳士」, 『歷史學研究』 1, 1987; 鄭炳喆, 「明末·清初 華北에서의 自衛活動과 紳士 -山東·北直隸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43, 1993 등 참조.
- 6) 權仁溶, 「明末 徽州의 土地丈量과 里甲制」, 『東洋史學研究』 63, 1998; 同, 「明末清初 徽州의 役法變化와 里甲制」, 『歷史學報』 169, 2001; 同, 「明代 徽州의 里 編制와 增減」, 『明清史研究』 13, 2000; 韓智善, 「明末 松江府의 海塘水利와 地方政府」, 『歷史學研究』 29, 2007; 金文基, 「明代 江南의 水利環境과 農業의 變化」, 『明清史研究』 11, 1999; 袁慧, 「明 嘉靖年間 寧波府鄉村保甲條約」, 『中國史研究』 47, 2007; 元廷植, 「巡撫 許孚遠 明末의 福建社會 -萬曆 22年 福州의 食糧暴動 中心으로-」, 『明清史研究』 5, 1996; 吳金成, 「明末 湖廣의 社會變化와 承天府民變」, 『東洋史學研究』 47, 1994; 同, 「明代 鄱陽湖 周邊 農村의 社會變動」, 『東洋史學研究』 22, 1985; 同, 「明末 洞庭湖周邊의 水利開發과 農村社會」, 『歷史學報』 77, 1978 등 참조.

## II. 里甲制의 성립

### 1. 明初의 토지정책

명조는 사회·경제적 기초를 확립하여 가는 과정에서 전란으로 황폐해진 농업 생산을 회복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농민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자 힘써 가고 있었다. 태조는 홍무 원년(1368)에 각 주현의 荒田은 구 소유권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개간하는 자의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3년간의 조세를 면제하여 개간을 장려하였고 또 개간지 이외의 각지에서도 조세의 면제나 경감을 피하여 농민의 안정을 도모하였다.<sup>7)</sup> 1370년 3월에 그는 남경·하남·산둥·북평 및 절강·강서의 廣信·饒州 등지의 농민에게 그 해의 田租를 면제해 주었다.<sup>8)</sup> 또한 하남 鄭州의 지주인 蘇琦의 건의에 따라 태조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도록 하고 동시에 유민들을 招撫하여 관에서 소와 종자를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sup>9)</sup> 6월에도 강남의 소주·송강·가흥·호주·항주 등 諸府에 있는 無田者 4,000호를 강북의 臨濠로 이주시키고 아울러 정부가 그들에게 耕牛, 종자, 식량 등을 지급함과 동시에 3년간의 조세를 면제하여 주었다.<sup>10)</sup> 그 이듬해에 태조는 衛國公 徐達로 하여금 산간에 살고 있는 3만5천8백호(19만7천27인)를 北平衛인 북경으로 이주시키어 군인이 되는 자에게 의복과 양식을 주고, 농민이 되는 자에게 田土를 주어 경작시켰다.<sup>11)</sup> 홍무 9년(1376) 11월에 그는 산서 및 眞定府의 농민 중 무전자를 강북의 鳳陽府로 이주시키어 토지를 개간하여 살도록 하고 그 때에 겨울 옷가지를 지급하면서 격려하였다.<sup>12)</sup>

이처럼 태조는 빈번히 강남·산서·광둥 기타의 무전민들을 원 말의 전란으로 황폐화된 화북이나 강북으로 이주시키는가 하면, 유민을 招撫하여 황토의 개간, 농지

7) 鶴見尙弘, 「明代における郷村支配」, 『岩波世界歴史』 12, 岩波書店(東京), 1971, p.59.

8) 『明史』 卷2, 太祖本紀 3年 3月 庚寅條.

9) 『明通鑑』 卷3, 洪武 3年 3月 丁酉條.

10) 『明通鑑』 卷3, 洪武 3年 6月 辛巳條.

11) 『太祖實錄』 卷66, 洪武 4年 6月 丁未條.

12) 『太祖實錄』 卷110, 洪武 9年 11月 戊子條.

화에 주력하였다. 『明實錄』에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호부의 보고가 있고 거기에 그 해에 개간된 토지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1368년부터 1380년까지 개간·정비되어 중앙에 보고된 토지는 약 180만여 경에 이르고 있다.<sup>13)</sup> 이 숫자를 그 이듬해인 1381년의 전토 통계 367만 7715경 49무와 비교하면,<sup>14)</sup> 이것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는 전제왕조하의 관에 의한 통계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국초 이래 13년간 회복 및 개간된 토지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초에 사민 개간 정책이 활발하였는데, 그러면 이러한 토지를 할당하는데 무엇이 기준이 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홍무 3년(1370) 5월 권농 담당기관인 司農司를 재설치하였을 때의 일이다. 원 말의 전란에 의해 중원에 황폐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태조가 중서성 신하들로 하여금 명하여 ‘計民授田’한 바가 있고,<sup>15)</sup> 그런가 하면 또 1372년 5월에 반포된 조서에는 전란으로 토지를 잃어버린 유민이 鄉里에 돌아와 그 토지를 회복하려 할 경우에, 과거에 소유했던 토지가 비록 많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丁力이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종전에 전토를 적게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정력이 많을 경우에 관은 그 정력을 조사하여 거기에 맞게 부근의 황전을 할당해 경작하도록 하였다. 한편 만일 옛날 전토의 소유가 많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律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였던 것이다.<sup>16)</sup> 이는 명초의 사민 개간 정책은 ‘計民授田’, ‘驗丁授田’의 시책 하에 이루어졌으며 할당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丁이었음을 의미한다. 곧 명조는 농민 각호의 정력을 따져 거기에 맞는 토지 소유만을 용인하였으며 정력 이상의 토지 소유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태조의 자경농 육성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丁이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홍무 4년(1371) 3월 태조는 중서성의 臣들에게 민호에 토지를 지급할 때 정력을 살펴서 전토를 지급하

13) 和田清, 『明史食貨志譯註』 1, 『東洋文庫論叢』 40, 東洋文庫(東京), 1957, pp.53-54.

14) 『太祖實錄』 卷140, 洪武 14年 12月條.

15) 『太祖實錄』 卷52, 洪武 3年 甲午條.

16) 鶴見尙弘, 앞의 논문, p.60.

고 부자가 토지 겸병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겸병을 하는 자가 나타나 토지를 많이 점유하고 빈민을 전호로 삼는 자는 처벌한다”<sup>17)</sup>라고 하여 전토를 겸병하고서 전호에게 소작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편 홍무 5년(1372)에 태조는 “지난번 병난으로 인민들이 流散하여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일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즉시 풀어주도록 하라”<sup>18)</sup>고 하여 전국에 노비금지령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초의 노비들을 풀어 준 조처인 것이다. 이처럼 태조의 권농책은 노비나 전호를 인정하지 않고 소토지 소유에 기반을 둔 가족 노동력, 즉 부역 부담능력을 가진 자경농의 丁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그렇다면 이러한 지주의 토지 겸병과 지주적 토지 소유를 배제하고 자경농을 왕조의 사회적 기초로 하려는 태조의 농민정책의 현실은 어떠하였을까.

명초의 요역은 均工夫役이었다. 이것은 국초에 강남을 중심으로 각종 토목공사를 행하면서 인민의 노동력을 징발하던 하나의 지방요역이었다.<sup>20)</sup> 『명실록』 홍무 3년 7월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直隸의 應天 등 18府州 및 강서의 九江 饒州 南康의 3府에 均工夫圖冊을 편하도록 명한다. 매년 농한기에 인부를 京師에 보내어 함께 부역하게 한다. 일년에 대개 30일 役하고 귀환시킨다. 田이 많고 丁이 적은 자는 佃人으로서 부역하게 하고 그 대신 전호에게 米 1石을 주어 그 비용으로 쓰도록 한다. 전인을 대신 보내지 않고 畝를 계산하여 인부를 보내는 자는 그 비용으로 田 1畝에 米 2升 5合, 100畝이면 2石 5斗를 내게 한다.<sup>21)</sup>

라고 하면서 균공부역에 의해 민이 각종 토목 공사에 종사했음을 알 수 있으며, 강남지방에서 공평히 할당하기 위하여 均工夫圖冊이 편찬되었으며 균공부역은 田 1頃당 1명의 비율로 할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17) 『太祖實錄』 卷62, 洪武 4年 3月 壬寅條.

18) 『太祖實錄』 卷73, 洪武 5年 5月條.

19) 鶴見尙弘, 앞의 논문, p.60.

20) 山根幸夫, 『明代賦役制度の展開』, 東京大學出版會, 1965, p.12.

21) 『太祖實錄』 卷54, 洪武 3年 7月 辛卯條.

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균공부 차출에 있어서 田 1頃당 丁夫 1명을 비율로 하였다는 점인데, 여기서 1頃은 당시 강남지방의 일반 농가가 경영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넘고 있는 면적이라는 점이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지주적 토지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丁力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는 소작하고 있는 전호를 대신하여 균공부의 부역에 보낼 수 있음을 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이는 전호로서 代役시켰을 경우에 지주는 그 전호에게 米 1석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지주와 전호사이의 관계가 계약에 의한 단순한 토지대차의 관계를 넘어 일상적인 공동체적 규제를 매개로 한 신분적·인격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곧 비지주는 지주가 대역을 시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sup>22)</sup>

이렇게 볼 때, 태조가 자경농을 왕조의 기초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초에 이와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국가권력이 용인하고 이에 의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은 왕조가 규정하려고 한 향촌의 禮를 규정한 제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주원장이 원 말의 동란을 수습하고 천하의 예의풍속을 교정하기 위해 홍무 5년(1372) 민에게 발표한 조칙에서,

향당에서 齒를 논하는 것, 즉 연령에 따라 서열을 정함은 예부터 숭상하여 온 것이다. 무릇 평상시 서로 만났을 때는 揖拜의 禮를 행할 것이며, 그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한다. 歲時 연회좌석의 배열은 장자가 상석에 앉는다. 전호가 전주를 뵈 때에는 齒序에 관계하지 않고 아울러 少가 長을 모시는 예로서 한다. 만약 친속관계에 있다면 主佃을 따지지 않고 친속의 예를 따른다.<sup>23)</sup>

라고 하였다. 이 조칙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연회석에서 일반적으로 長幼의 序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연령에 관계없이 ‘少가 長을 모시는’ 예로서 하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향당의 서열을 정함에 있어 主佃의 관계가 제기되었음을 의미하며, 주전의 사이가 친족일 경우에는 친족의 관계가 주

22) 全淳東, 『明太祖 自耕農 育成에 대하여』, 『忠北史學』 5, 1992, p.12-13.

23) 『太祖實錄』 卷73, 洪武 5年 5月條.

전보다 우선하도록 한 종법적 질서가 설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지주·전호의 대항관계를 종적인 가족 관계로서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곧 여기에서도 명 초 농촌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지주·전호 관계를 국가 권력이 인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농촌 질서의 안정을 꾀하려 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명 초 태조는 지주에 대하여 엄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그가 지주들을 엄히 다룬 것은 첫째로 舊來의 몽고지배체제와 결부되어 있던 특권적 지주 내지는 명조와 대립 관계에 있던 기존의 군용세력으로서의 지주를 타도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왕조지배 체제하에서 기생하면서 세력을 펴고 있는 지주층을 억압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의 지주에 대하여 가혹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를 보면 蘇州府의 경우, 매년 100석 내지 400석의 세량을 내는 지주가 490호, 500내지 1000석의 세량을 바치는 지주가 56호, 1000내지 2000석을 바치는 지주가 6호, 2000내지 3800석을 내는 지주가 2호로서 모두 554호였는데, 이들 지주가 소주부 民糧의 대부분인 15만석의 세량을 납부하고<sup>25)</sup>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조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전토를 몰수하고, 종종 정치적 사건에 연좌시키어 지주를 몰락시킨다든지, 혹은 강남의 부호를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도성의 건설 비용을 조달시켜 지주를 억압하였다.

그렇지만 태조는 이처럼 지주를 타도하고 또한 지주층을 억제해가면서도 지주적 토지 소유체제 자체를 변혁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주적 토지 소유체제에 의거하여 스스로 최대의 지주가 됨과 동시에 그 재정적 기반을 중심으로 왕조를 건설하려 하였다. 태조는 원 말부터 차차 父老와 유사 지주들을 위무하고 그들에게 백성이나 자제들의 敎導를 명하여 생업에 전념하도록 하게 하였으며, 특히 수리 관개시설의 정비·보수를 감독시켰다. 그렇게 한 것은 원 말의 동란에도 불구하고 부농 지주들은 여전히 향촌의 지도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다.<sup>26)</sup> 왕조는 권력 획득의 과정에서 지주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향촌

---

24) 鶴見尙弘, 앞의 논문, p.65.

25) 山根幸夫, 『明帝國の形成とその發展』, 『世界の歴史』 11, 筑摩書房, 1969, p.19.

26) 賓島敦俊, 『明代江南農村社會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82, p.30.

에서 이들의 지배력을 인정해야 비로소 국가 권력이 개별적인 농민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밖에도, 명왕조의 지배 기구를 형성하는 관료층도 대부분 지주층이었다. 1376년 富民에 대한 관리 임용령이 발표되었는가 하면, 또 과거시험에 의해 등용되는 관료들의 출신도 거의 지주층에 한정되어 있었다.<sup>27)</sup> 그들은 요역면제 등의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왕조 권력기구의 사회적 기반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명조의 국가 지배체제의 말단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갑제에서의 핵심 세력인 里長戶·里老人·糧長戶 등을 기존 지주층에서 선발하였던 점을 통해 왕조 권력기구의 사회적 기반이 지주층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조는 빈농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왕조가 아니라 오히려 지주층을 그 지배체제에 포섭해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삼아 통일적인 지배기구를 구축한 왕조였다고 할 수 있다.

---

27) 鶴見尙弘, 앞의 논문, p.65.



## 2. 里甲制와 里老人

일반적으로 명조 정권의 성격을 일컬어 지주계급의 기반 위에서 성립한 전통적 봉건왕조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명 태조는 사회모순 완화와 농민생활 안정이라는 급선무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한 이유로 명의 경제정책은 전통적인 지주 중심의 정권 유지와 농민생활 안정의 이중 구조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주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서 농민을 보호해 주는 약간 모순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沒官田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명태조가 토지 검병에 대한 탄압을 시도한 것이었다.<sup>28)</sup> 그러나 이것을 지주의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곧 반명세력 및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지주 혹은 富民에 대한 반격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친원적인 부호·호민에 대한 억압과 부민에 대한 탄압, 원대의 故官·里長의 부정행위 등의 관련된 부분을 토지 검병과 관련시켜 정리시켜 나갔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29)</sup>

명대의 이런 이중 구조를 배경으로 태조의 사회·경제적 인식이 반영된 향촌통치 제도로서 元대의 社制인 50戶 1社를 폐지하고 縣아래의 향촌을 재조직 및 지배하기 위한 기본 조직인 里甲을 통해 중앙의 행정명령을 농촌사회 깊숙이 침투시켜 세력의 효율적인 징수 및 촌락 공동체의 향촌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홍무 14년(1381)에 이갑제가 확립하게 된다. 이갑제는 종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촌락의 공동체 질서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원칙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110호를 1리로 편성하고, 丁男과 재산의 다과에 따라 戶等を 구분하는 제도로, 110호 중 上等戶 10호를 이장호로 하고 나머지 100호를 甲首戶로 하여, 10甲에 각 10호씩 배속시켰다. 매년 이장 1명과 각 갑에서 차출된 갑수 10명이 里内の 부역의 징수, 치안유지, 재판, 교화, 부역황책의 작성 등 향촌 통치의 많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장·갑수의 이러한 의무인 이갑정역은 10년에 한번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sup>30)</sup> 이갑제 내의

28) 『明史』 卷77, 「食貨志」, 田制條.

29) 森正夫, 『明代江南土地制度の研究』, 同朋舎(東京), 1988, pp.69-100.

30) 『明史』 卷78, 「食貨志」, 賦役條.

이장에 관해서는 원대에서도 부호가 이장직을 맡았었는데 명대에서도 이를 답습하여 제도화한 것으로,<sup>31)</sup> 이장호는 주로 지주였으며 갑수호는 주로 자작농이었다. 이처럼 이갑제는 전부터 존재해왔던 지주에 의한 사회 지배관계를 토대로 만든 행정상의 조직이었다.

특히 이갑제에서는 백성들의 정확한 신고를 기초로 적정한 세역을 부과한 것으로, 民戶이외의 軍戶·匠戶·竈戶는 호적 그 자체가 일종의 특수한役に 종사하였음을 나타내는데, 군호는 衛所, 장호는 工部, 조호는 鹽課司, 민호는 주현에서 각각 관장하였다. 또한 민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호는 호구와 소유지에 따라서 부세요역의 장부에 분류·등제되었는데, 세대를 3등·5등·9등급으로 나누고 또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丁男은 부역의 의무를 가졌다.<sup>32)</sup> 부역은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함인데, 免役의 대가로 현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여 복역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태조는 이와 같은 本役に 累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일반적으로 민호에 요구하는 잡역 등을 모두 면제시켜주면서 국가 재정의 근원을 田租로부터 출발시켰고 원대의 강압적이고 잡다한 세목 등을 폐기하고 합리적이고 정밀한 과세 제도를 마련하여 민이 모두 자급자족할 수 있는 현물경제의 체제를 확립하고 그 사이에 銀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하며 또한 상인들의 재등장을 막고 농본정책을 매우 중시하였다.<sup>33)</sup>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 조치로서는 墾荒, 移民屯田, 興修水利, 種桑植綿의 장려, 農具稅收의 면제 등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또한 부세의 징수원칙은 민이 곤궁하거나 힘겨워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4)</sup>

그러나 결국 민을 부유하게 하는 최종 목적은 朝廷을 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조정과 백성의 관계를 사람이 馬를 부리는 것에 비유하였다. 즉 말을 부리는 사람이 너무 급하게 고비를 잡아당기거나 채찍질을 하면 말이 넘어지고 말이 넘어지면 사람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sup>35)</sup> 즉, 국가 경제의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31) 『永樂大典』, 『吳興續志』; 山根幸夫, 『明代徭役制度の研究』, 同朋社(東京), 1966, pp.37-38에서 再引用.

32) 『明史』 卷77, 『食貨志』, 賦役條.

33) 朴宗喆, 『明太祖의 敎育思想 研究』, 『敎育論叢』 2, 1982, p.19.

34) 『太祖實錄』 卷172, 洪武 18年 3月 壬戌條.

조정과 백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백성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명대의 正役은 里甲正役이란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이갑제와 깊은 관련에 놓여 있었다. 이갑정역의 핵심은 催辦錢糧과 勾攝公事였다. 최관전량이란 現年の 이장호와 갑수호가 里内の 각 호에 부과된 세량을 催徵하고 수납하는 임무를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구섭공사는 里内の 사건 내지 소송안건이 관부의 지시에 의한 범인의 체포, 원고 혹은 증인의 구속이나 출두 등의 구체적이고 한정된 직무를 의미한다. 이를 중심으로 한 이갑정역은 원래 그 부담의 정도로 보아 감당치 못할 중역은 아니었으나, 행정의 최 말단 관부인 주현의 주요 기능이 재정과 사법 및 치안의 유지에 있기 때문에 이갑정역은 現年 이갑을 州縣衙門의 보좌역으로 충당하여 里内の 전곡과 형명을 관장하도록 구상된 것이었다.

한편 이갑정역의 輪年應役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는 1년에 1갑씩 돌아가며 응역하여 10년마다 한번 씩 돌아오게 되는 방식이다. 즉 1명의 現年 이장이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里의 갑수호 10명을 거느리고 응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 갑 10家內에서 1家씩을 現年으로 뽑아 각 갑의 현년 갑수 10명이 현년 이장의 통솔 하에 응역하는 방식이다.<sup>35)</sup> 이갑정역 이외의 요역은 일괄하여 잡역이라 불렀고, 다만 잡역의 부담을 보다 정기화하고 또 공평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15세기말까지 균徭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첫째, 잡역의 할당을 위한 요역대장으로서 均徭冊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준은 주로 세량의 다과였다. 둘째, 종래 부정기적으로 科派되던 잡역이 정기적인 할당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윤번의 방식을 채택하여 갑을 단위로 하여 10년에 한번 씩 이갑정역을 담당한지 5년째 되는 해에 담당토록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半官半民의인 성격의 이갑정역을 중심으로 홍무 14년에 이갑제도와 부역제도가 정비되었다. 부역의 대상인 관전과 민전은 田, 地, 山, 塘 등으로 구분되었고 각 地目에 따라서 等則을 정하고 등칙에 준하여 일정한 세량을 징수하였다.

35) 『太祖實錄』卷76, 洪武 5年 9月 丁酉條.

36) 權仁溶, 「明末清初 徽州의 役法變化와 里甲制」, 『歷史學報』 169, 2001, p.4.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기 전 吳王이었을 때 부세를 생산액에 대한 1/10의 세율로 징수하였고<sup>37)</sup>, 건국 후에는 관전과 민전에 대한 田賦를 실제의 징수액수로 결정하였고 토지의 구분에 따라서 세액도 구분하였다.<sup>38)</sup>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명대에서는 세율과 등급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율이 원칙으로써 적용된다 하더라도 생산량의 여하에 따라서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한편 등급에 있어서도 등급을 실제의 생산량에 관계없이 전지에 대하여 一畝에 米 몇 升이라는 일정한 세액을 추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급과 세율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될 때에는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진 일정한 생산량에 세율을 적용시켜 실제 세액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대의 稅制는 등급과 세율의 이중 관계에서 등급에 의해 구분된 각 田地가 세율에 의하여 畝에 대한 실제 세액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명대에서는 세액에 각각의 차이를 결정하는 등급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액 결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등급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가를 찾아보면 관전이 구분되어 있었음은 물론이거니와 府와 縣에 있어서도 전부의 세액양에 따라서 3등으로 구분하여 상중하의 등칙을 두었고, 이갑제하의 戶에 있어서도 호를 상중하의 3등으로 구분한 호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명조는 천하의 전토를 조사하여 부세를 정하고<sup>39)</sup> 국가의 통치조직의 최하위 단위인 이갑제에 이르기까지 세량 징수체계를 유지하면서 전부를 징수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부 징수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었던 행정상의 근거와 징수의 담당체제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곧 賦役黃冊과 魚鱗圖冊인 것이다.

부역정책은 간단히 黃冊이라고도 한다. 홍무 14년(1381)에 이갑제가 조직됨과 동시에 田賦와 役의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 작성되어진 것이다. 이갑제하의 이장호·갑수호는 이갑정역을 담당하고서 里内の 전부를 징수하고 갑역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갑호가 부역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

37) 『明史』 卷77, 「食貨志」, 賦役條. ‘太祖爲吳王 賦稅十取’.

38) 『明史』 卷77, 「食貨志」, 賦役條. ‘太祖定天下官民田賦 官田畝稅五升三合 民田減二升 重稅田八升五合五勺 沒官田一斗二升’.

39) 『明史』 卷77, 「食貨志」, 賦役條.

로 編造된 것이 부역황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역황책에는 전토의 수와 세량의 액수·호적·정남의 수 등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sup>40)</sup> 조세대장이며 호적부였다.

부역황책의 작성 이외에 조세 징수를 위한 어린도책<sup>41)</sup>은 홍무 20년(1387)에 편성되었으며 황책과 마찬가지로 전토를 기준으로 세량과 역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민이 역을 피하고 세액을 속이기 위하여 전토를 親隣과 田僕 등에게 詭託하여 부정을 자행하여 생기는 부익부·빈익빈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전부와 역을 균등하게 부과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sup>42)</sup> 어린도책을 먼저 절강·직례(남직례)·강서 등 화중지방에서 실시되었고 산둥·호남·하남 등지에서도 시행되었음이 보이고 있으며 토지의 소유자명과 토지소유의 면적과 전토의 위치, 그리고 각 전지의 성질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전토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의 爭訟에 증거로도 이용되었다.<sup>43)</sup> 그러므로 어린도책은 토지대장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이처럼 부역황책과 어린도책의 근거로 이갑호는 戶内の 丁男과 자산의 고하에 따라 호등을 부여받아 이갑정역을 부담함으로써 세량 징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징수 시기는 전부를 夏稅와 秋糧으로 구분하여 1년에 두 번, 즉 하세는 음력 5월 15일부터 7월까지이며, 추량은 10월 1일부터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하였다.<sup>44)</sup> 그리고 징수대상은 일반적으로 하세는 米·麥·錢·鈔·絹 등이었고, 추량은 米·錢·鈔·絹 등으로 되어 있었지만 분명하게 원칙을 밝혀 하세와 추량의 기준을 米·麥으로 하여 本色으로 삼고 이외의 錢·鈔·絹 등은 折納케하여 絶色으로 삼았다.<sup>45)</sup>

지금까지 이갑정역을 중심으로 한 이갑제도, 그리고 부역황책과 어린도책이 편성됨에 따른 부역제도의 성립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갑제는 세역의 징수를 목적으로 편성된 제도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갑단위만으로는 향촌의 상호활동이 미흡하였

40) 『明史』卷77, 「食貨志」, 田制條.

41) 이는 조세 징수의 기초 서류로 작성한 官簿로, 토지관계의 소송에도 그 증거로서 사용되었다. 송나라 때부터 비롯되어 명·청나라 때는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일정한 구역의 전체 토지를 세분한 지적도의 모양이 고기 비늘과 같다 해서 魚鱗圖라 붙여진 이름이다.

42) 『太祖實錄』卷182, 洪武 20年 2月 戊子條.

43) 『明史』卷77, 「食貨志」, 田制條.

44) 『大明律』卷7, 戶律倉庫收糧違限.

45) 『明史』卷77, 「食貨志」, 賦役條.

고 里 자체만으로는 통일성이 유지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으로, 홍무 27년(1394)에 이노인제를 따로 설치하여 이노인으로 하여금 里民의 향촌활동을 돕고 풍속을 교화시키며, 농업을 장려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배양하도록 지도하는 직책을 맡게 하였다. 이노인제의 설치에 대하여 『명실록』에는 홍무 27년에 이노인을 두어 戶婚·田宅·鬪毆와 같은 경미한 사건의 처분권이 명확히 이노인에게 주어졌으며, 같은 해에 이노인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敎民榜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홍무 31년에 선포된 敎民榜文<sup>47)</sup>은 위의 홍무 27년의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홍무 31년은 이노인제가 완성된 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홍무 31년(1398) 9월에 간행된 교민방문<sup>48)</sup>의 몇몇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노인의 주된 임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첫째, 里内の 모든 일상적인 爭訟에 대해서 이장과 함께 재판을 행하고(序文 1,3,4條)
- 둘째, 이갑주민에 대한 훈계, 선행자에 대한 보상의 신청, 木鐸노인의 관리, 大誥三編 강독의 勵行 등 향촌교화에 관한 여러 임무를 맡았고(16,17,19,21,31,38條)
- 셋째, 耕種의 督責, 桑·麻·棉 栽培의 감시 등 권농의 사무를 맡고(24,29條)
- 넷째, 鄉里의 상호부조의 활약을 지도하며(25條)
- 다섯째, 預備倉의 관리임무와 里甲 내의 도망자 및 악인에 대한 誠告 등의 치안유지를 담당하였던 것이다.(15,21條)

이처럼 명초에 이노인제를 통해 이갑제의 보완과 부역제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였지만, 부역제도는 영락년간의 國都北遷 사건을 시작으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는 홍무년간의 수도였던 남경에서 영락제가 즉위하면서 수도를 북경으로 옮긴 것인데, 수도가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하게 됨에 따라서 세량을 북경으로 운반하게 되면서 운송거리의 확대라는 문제를 낳게 된 것이다. 즉 운송노동을 위한

46) 『太祖實錄』卷232, 洪武 27年 4月 壬午條.

47) 洪武31年 3月 19日 戶部尙書 등이 聖旨를 받들어 지금까지 행하여 온 太祖의 향촌통치에 관한 이갑제의 諸規定을 무릇 41개조로 정리한 것이다.

48) 『皇明制書』卷9, 「敎民榜文」, 成文出版社(臺北), pp.1405-1444.

요역 부과와 세량에 대한 부가세의 증가로 영락 시기가 되면 관전 납부자에게도 잡역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면제받던 부분이 점차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영락이후, 강남지역 민의 利病을 조사해 보았더니 관부의 폐정, 豪强들의 견병에 의한 인민 도호의 발생, 양장의 폐단, 잡역 할당의 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양장은 홍무 4년 이래 이갑제의 바탕 위에서 區라고하는 촌락 자치조직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관료적 성격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해운의 책임이 주어짐에 따라 관료의 발탁 기회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양장은 향촌에서 명예직으로서 상당히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홍무년간의 양장제는 강남에서 실시되었고, 수도가 강남의 응천부에 있었기 때문에 양장이 책임지는 해운은 수송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더욱이 명초의 知數·斗級<sup>49)</sup>·送糧人夫 등의 잡역을 부과 받은 糧戶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米糧을 남경까지 民運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락년간에는 수도를 북경으로 천도하게 되어, 그에 따라 조운을 북경으로 수송해야 했다. 동시에 대운하의 완공으로 漕運法도 성립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조운의 방법은 支運法<sup>50)</sup>이라 하였다. 하지만 지운법의 실시 후에 각 지방의 양장이 맡아야 할 民運의 거리가 너무 멀었고 그 결과 민간의 부담 역시 매우 컸다. 이 때문에 선덕원년에는 다시 조운법을 개정하여 민운의 장거리 운송을 조정하기 위하여 兌運法<sup>51)</sup>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강남지방에서의 민운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운송의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 그만큼 양장과 양호의 부담이 컸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송량의 수배가 소요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 민운에 의한 고통을 짐작할 수 있

49) 米糧을 計量하고 等級을 정하는 役.

50) 『明史』 卷79, 「食貨志」, 漕運條. 이는 각 향촌의 糧長이 民運을 통하여 정해진 水次倉까지 漕糧을 운반하면 그 수차창에서는 運糧衛所의 運軍이 인수하여 각 수차창의 운군에게 인수 및 교체하여 북경까지 운송하던 제도였다.

51) 『明史』 卷79, 「食貨志」, 漕運條. 이는 民運의 장거리 수송은 대체로 강남지방에는 瓜州·淮安까지만 민운으로 수송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해당 水次倉에서 衛所의 運軍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수송도중에 감소되는 米糧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耗米 또는 加耗米를 민운 측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인수받은 운군은 이를 支運法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북경까지 수송함에 따라, 糧長과 糧戶 측에서도 민운의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었기 때문에 경작시기에도 별지장이 없고 또 편리하였기 때문에 주로 이용되었다.

을 것이다.<sup>52)</sup> 특히 糧戶의 입장에서는 민운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경작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 결과 납세할 능력조차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곧 양장의 부담과 희생이 많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양장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고통이 민호에게 주구적인 태도로서 사리를 추구하는 부정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해, 결국 농민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sup>53)</sup> 이처럼 홍무년간의 양장의 존재는 영락 시기 이후에 오면서 이젠 里民에게 봉사한다는 모습은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고 동시에 조운법의 변화와 함께 양장의 성격 또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선덕년간에 이르러서는 인민 도호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재지 지배층을 탄압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곧 이갑제의 유지 및 세량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실제로 홍무 21년부터 구휼정책으로 官田減租율이 일반민들의 납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었다.<sup>54)</sup>

한편 이노인제 역시 확실한 폐퇴하는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명중기의 농촌 사회체계의 동요로 인해 많은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특히 선덕 3년(1428) 호부에 내린 선덕제의 諭<sup>55)</sup>를 통해 이노인이 세호·호민들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등의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무렵에 이노인이 재판을 행하는 申明亭·旌善亭이 廢弛되었으며,<sup>56)</sup> 예비창 관리 및 儲糧의 賑給 등의 임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57)</sup>

이와 같은 향촌 공동체 붕괴과정은 그 후에도 가정 5년(1526)에 福建 道御史 朱豹의 발언<sup>58)</sup>과 가정 39년(1560)에 吏科給事中인 胡應嘉가 올린 ‘上條四事’<sup>59)</sup>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계속되는 세호·호민의 황포와 士人層의 퇴폐풍조 만연으로 결국 이노인제가 쇠퇴하였던 것이다. 대책으로 정부는 선덕·경태년간에 6부 도찰원에 명령을 내려 이노인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노인의 권농의 임무를 진흥시키고 그 教諭

52) 顧炎武, 『天下郡國利病書』, 卷84, 浙江2, 北運歷年條議.

53) 『明史』 卷78, 「食貨志」, 賦役條.

54) 『況太守集』 卷2, 「列傳」中, 正統 元年 3月.

55) 『宣宗實錄』 卷47, 宣德 3年 9月 乙亥條.

56) 『宣宗實錄』 卷86, 宣德 7年 正月 乙酉條.

57) 『宣宗實錄』 卷55, 宣德 4年 6月 壬午條.

58) 『世宗實錄』 卷71, 嘉靖 5年 12月 辛酉條.

59) 『世宗實錄』 卷480, 嘉靖 39年 正月 壬辰條.



에 따르지 않는 자는 敎民榜文에 따라 懲治함으로써 이노인제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노인제의 기능 회복은 이미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모순은 심화되어 향촌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안정책이 절실히 되었다.

이와 같은 양장제와 이노인제의 붕괴에 따른 명 중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상품 경제의 발달과 세역의 은납화의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 Ⅲ. 상품경제의 발달

#### 1. 상품경제의 발달

명 중기부터 시작된 은경제의 보급은 곧 화폐경제를 발달시켜왔고 명 말에 와서는 상업 활동을 추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에 기존에 존재해왔던 이갑제형식의 경제기초는 서서히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따른 대토지소유관계는 점차 심각하게 나타나 지주·전호 관계로 인해 농민의 빈곤성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화폐경제의 교환수단을 銀으로 하여 국가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농민 측에서는 대토지 소유현상으로 농민층이 분해되는 위기를 맞게 되어 稅制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sup>60)</sup>

그리고 은이 동전과 함께 중국 각지에서 화폐로서 유통되면서 부역을 은으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원래 자급자족하던 농민은 화폐경제와 시장 속에 예속되게 되었고 부의 개념도 점차 粟帛에서 白銀 화폐로 변하였다. 그 때문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부호들까지도 은을 구해야 했다. 그 결과 명 말기 경에는 은은 주요 생산물·상품교역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의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강남에서는 은을 얻기 위해 곡물보다는 상품작물의 생산이나 수공업에 더 많이 치중하면서 미곡을 다른 지방에서 수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미곡 시장의 형성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sup>61)</sup>

한편으로는 모든 농민이 부세의 은납화에 적응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수가 늘었고 이 유랑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자유노동자가 되거나 소상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상업 활동은 은을 획득하여 많은 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은의 유통에 따른 은납화는 향촌에 살고 있고 현물 교환경제에 익숙해져 있던 부호와 지주·소작농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은 재산의 기반이었던 추수 후의 수

60) 金鍾博, 「明代 東林黨爭과 그 社會背景」, 『東洋史學研究』 16, 1981, p.3.

61) 吳金成, 「國法과 社會관행 -明代의 紳士 優免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197, 2005, p.123.

확물 등의 현물을 세금으로 낼 상황이 되어도 갈수록 은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당포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은을 얻기 위해 현물보다는 가내수공업에 종사하거나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전당업자들을 통해 현물을 은으로 바꾸었다. 이처럼 은의 중요성에 따른 유통이 많아지자 여러 상업업무를 처리할 전당업이 성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빠른 속도로 은납화는 진행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과정은 농촌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라 상업·고리대자본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빈농은 세량이나 소작료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게 보조의 수단으로서 농가부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는 토지 소유관계에서 지주·전호 관계의 발생처럼 수공업에 있어서도 소농민생산자와 고리대자본의 관계가 성립되어 농가부업 그 자체가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경영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면화재배, 면방직업, 양잠 등은 지방농촌에서 중요한 부업경영으로 보급 발전되어 갔다.

예컨대, 명 중기 선덕 8년(1433)에 이미 巡撫侍郎 周忱에 의해 면포의 절납이 인정되었고<sup>62)</sup> 역시 은으로 대납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다. 따라서 면포생산은 은을 획득하기 위해 시장으로 나가게 되어 면포는 상품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해 온 면포생산은 점차 보급 확대되고 그에 따라 면화재배는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었다. 동시에 桑의 재배 역시 면화와 함께 활발하게 발전되어 갔다. 그 결과 면포가 대중적인 衣料로서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絹이나 茶 등 여타 상품을 압도하고 상품경제의 중심적 지위를 획득해 갔고, 특히 송강부 등 강남産 면포는 품질과 생산능력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원격지 판매를 하였다.

화북의 경우 자생적 상품경제가 미숙한 단계에서 이러한 전국적 면포 유통망에 포섭되어, 수공업 선진지역인 강남에서 생산된 상품인 면포의 판매처로서 재편성되었고 강남의 선진지역에 원료인 면화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대신 일상 생활용의 면포까지도 강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는데, 이런 상황은 특히 수운의 편리가 적거나 없고 농업생산력도 낮아 경제권으로서 자립화가 어려운 지역의 하나였던 화북의 내륙부인 하남, 산서, 섬서 지역에서 두드러졌다.<sup>63)</sup>

62) 『宣宗實錄』 卷94, 宣德 8年 3月 戊辰條.

반면 수운과 농업 생산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동 및 북직례 남부는 상황이 좀 달랐다. 특히 이곳은 명대 이래 대운하가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면화 공급이 충분하였고, 북으로는 수도와 北邊에 막대한 물자를 조달하는 중개지 혹은 공급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이 있었다. 화북 내륙부의 경우에는 명말 몽골과의 화의로 서북방의 北虜 문제가 소강상태가 되면서 북변으로의 군수물자 조달의 경기가 급속히 줄었으나, 산동의 경우는 인근에 요동이라는 또 다른 북변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명 말 만주족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명의 군사력이 요동 방면으로 집중되자 새로이 동북방의 북변에 큰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요동에 가장 가까운 산동이 그 공급기지로서 부각되었던 것이다.

또한 산동의 서부 지역과 황하 연변 일대는 염기질 토양이어서 곡물 재배보다는 면화 재배가 훨씬 유리하여, 명대부터 면화 재배가 급속히 퍼졌다. 가정·만력년간에 산동의 6부 104개 주현 중에서 면화 재배가 확인되는 주현이 40여 곳, 약 40%에 이르고, 그 비율은 청 중엽에 이르면 8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sup>64)</sup>를 통해 산동에서의 면화 재배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명 중기 이후 강남 면포 생산이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급속한 발전을 하면서 산동은 주요한 면화 공급지로 부상할 수 있었다.<sup>65)</sup> 그 결과 이곳의 면화 재배 효과는 청대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컨대 齊東縣에서 “일체의 公賦, 終歲經費를 거의 布綿을 팔아서 충당한다”<sup>66)</sup>라거나 臨邑縣에서 “充賦治主함에 木棉이 최고이다”<sup>67)</sup>라는 것처럼 생계를 전적으로 면화 재배에 의존하게 될 정도로 높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품용 면포 생산도 확산되었는데, 예컨대 가정년간 東昌府 濮州産 면포는 하남, 북직례, 북변 일대로 수출되고 있었고 同州 출신으로 “북변과의 면포 무역에 종사하여 10배의 이익을 올렸다”는 상인도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만력년간에 산동 면포가 산동 내의 타 지역은 물론 서북, 심지어 강서로까지 팔려가고 있으며,<sup>68)</sup> 이러한 사례는 靑州府 臨朐縣, 沂州 등지에서도 보인다.<sup>69)</sup> 이처럼 산동에서는

63) 山本進, 『清代華北の市場構造』, 『東洋史研究』 17, 1993, p.32.

64) 許 檀, 『明清時期山東商品經濟的發展』,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8, pp.43-45.

65) 陳冬生, 『明代以來山東植綿業的發展』, 『中國農史』, 1992-3, pp.67-68.

66) 康熙, 『齊東縣志』 卷1, 風俗志.

67) 同治, 『臨邑縣志』 卷2, 風俗志.

명 후기부터 면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그에 따라 은의 유통도 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상공업이나 도시 경제의 발전이 현저하게 나타났지만 그 경제 내면의 구조는 여전히 봉건적인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먼저 수공업에 있어서 방직업을 보면 어느 지역은 이미 專業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강남의 嘉興·湖洲 등은 견직물의 생산 기술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났으며, 특히 松江은 면포 생산의 최고기술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다.<sup>70)</sup> 浙江의 金華·溫州에서는 면포 생산이 발전하여 필요한 挑織匠을 강남지역에서 불러올 정도였다. 한편으로 麻布방직업의 경우는 대체로 중원지구가 집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특히 水轉大紡車를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 생산력이 향상되었고<sup>71)</sup> 특히 마포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향촌 민가에서 脚車를 사용하게 되면서 “一女工並敵三工”이라 할 정도로 생산력이 향상되었다.<sup>72)</sup> 또한 면포방직업의 경우는 효능이 비교적 높은 木棉攪車를 사용하고 있어서 면화의 씨를 제거하는데 이전보다 몇 배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 강남의 句容·太倉 등지에서는 목면교차를 사용하여 1인용의 경우 4인의 몫을, 2인용일 경우는 8인의 몫을 해낼 정도의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었다.<sup>73)</sup>

이처럼 면방직업의 발달로 원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상해·송강지방에서 원료인 면화의 재배 면적이 확대되었다. 특히 만력년간에 이 두 지역의 개간면적이 200만 畝 정도였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의 면적이 면화 재배에 사용되었고,<sup>74)</sup> 동시에 太倉 지역에서도 전체 토지의 3할 정도가 水稻地로 사용되고 7할 정도가 면화 재배에 사용되고 있을 정도였다. 그 결과, 상해·송강지방은 거대한 면화 재배지와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복건 지방의 상인들까지도 와서 면화를 구입할 만큼 방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75)</sup>

68) 萬曆, 『兗州府志』 卷4, 風土志.

69) 嘉靖, 『臨朐縣志』 卷1, 風土志; 鄭炳喆, 「明清時代 山東의 商業 -流通과 市場圈-, 『明清史研究』 13, 2000, pp.9-11에서 再引用.

70) 守應星, 『天工開物』 卷上, 弓服, 布衣條.

71) 徐光啓, 『農政全書』 卷36, 麻條.

72) 守應星, 『天工開物』 卷上, 乃服, 夏服條.

73) 徐光啓, 『農政全書』 卷35, 木棉條.

74) 徐光啓, 『農政全書』 卷35, 麻布條.

75) 吳偉業, 『梅村家藏稿』 卷10, 木棉吟.

또한 만력년간의 방직업은 蘇州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機戶出資·機工出力·相以爲命”<sup>76)</sup>이라 하여, 자본 점유자와 고용 노동자간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기공이 실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들은 무산자들로서 도시로 모여들었고, 이들 織工과 染工들은 기호가 설치한 공장에 들어가 노동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주와 항주지구는 사직업에 있어서 전국의 제일이었는데, 絲布를 짜는 베틀인 機杼의 소리가 끊어질 날이 없었고 市街에는 명주실인 紬絲를 중매하는 곳이 수백 개가 넘을 정도로 많아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들던 곳이었다.<sup>77)</sup> 그 중에서도 소자본의 小機戶들이 부업으로 시작해 기계화하여 자본을 축적해 갔으며,<sup>78)</sup> 상품경제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여 공장제 수공업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직공들도 점차 고용 노동자가 되면서 工匠들은 임금을 받았으며 緞工·紗工·車匠 등의 전문기술직으로 성장하여 분업화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sup>79)</sup>

이처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상업이 성장하게 되는데, 특히 남경의 경우에는 상업의 발달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貨物을 도시 내의 상업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경의 전당포가 정덕년간 이전에는 모두 남경인이 개점하였으나, 갈수록 紬緞布·鹽店 등이 대부분 외부의 富民들이 장악하기 시작했고,<sup>80)</sup> 鋪行에서는 강남의 방직업의 발달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상점이 등장하여 그 결과 기타 점포까지 합쳐서 남경 내에는 103개 종류의 점포가 존재할 정도로 번창하였다.<sup>81)</sup> 따라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이 역시 확대되어 官道를 침범할 만큼 都市가 확대되었다. 한편 변방의 도시로서 大同같은 지역도 그 규모가 강남 못지않아서 각지의 省·鎮·향촌에 이르기까지 貨物이 집결되면서 교역이 활발해졌다.<sup>82)</sup> 남경과 북경의 각 주현에 있어서의 商稅에 있어서도 선덕년간에 이미 전시대보다 5배의 물가고의 현상을 보였고, 다시 정덕년간에 다시 수배의 물가 급등을 보

76) 『神宗實錄』卷63, 萬曆 5年 6月 庚午條.

77) 馮夢龍, 『醒世恒言』卷18.

78) 同上.

79) 陳夢雷, 蔣廷錫, 『古今圖書集成』卷10, 考工典, 職工部.

80) 顯起元, 『客座贅語』卷10, 藝文印書館(台北), 民國57, 1968.

81) 正德, 『江寧縣志』卷3, 鋪行.

82) 謝肇淛, 『吳雜俎』卷3, 地部.

이고 있는데,<sup>83)</sup> 한편으로 이 사실은 상품경제 발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상공업의 발전에 따라서 각 지방에서 점차 行會와 會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수공업 조합인 行會로서는 북경과 항주에서 특히 유명하였다. 북경에서는 西行과 東行으로 나누어져 銅鐵業을 독점하고 있었고, 항주에서는 수공업행회가 독자적인 行規과 假日 등을 결정할 만큼 조직적이었으며 行會의 수도 360개나 되었다.<sup>84)</sup> 한편 회관은 일종의 길드조직 형식의 상업조합으로서, 특히 명 말기에 발달하여 각 관에서 상업 활동의 주요한 조직형식으로서 縣·州·省의 각 지역에서 각 단위로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山東濟南에서의 강남의 상인들이 올라와서 萬壽宮을 건축하여 이를 회관으로 삼고 집회장소로 이용하였으며, 북경의 경우는 강서상인들이 강북회관을 조직하고 상업이익을 보호하고 있었다.<sup>85)</sup>

수공업과 상업의 성장으로 도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부가 축적되면서 대수공업자와 대상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만력년간에는 거상이 증가하면서 강남의 新安, 강북의 山右로 구분되어졌다. 신안은 魚·鹽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산우는 鹽·絲를 통해 客主的 역할을 담당하여 신안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강남의 도시 경제발달로 점차 일반 富民들은 토지 경영을 기피하기 시작하였고, 대체로 강남의 大賈들은 이익이 적고 부역이 무거운 토지에서 이탈하여 상업이나 수공업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sup>86)</sup> 이러한 점은 수공업 경영에 따른 상업자본형성과 도시에서의 상인 노동자 계층의 형성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16·17세기의 중국사회에서 시민적 계층이 점차 형성되고 성장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도시계층의 성장은 대체로 강남도시에서 織布業의 機戶主들과 강남 大賈들이 대표적인 세력이라 할 수 있다. 도시상업의 번성과 그에 따른 시민의 증가는 곧 그들의 자체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商稅·鋪設置費 등의 세금을 징수할 경우 정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만력년간 工科給事中 何士晉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민계층의 경제 요구를 반영하

83) 王圻, 『續文獻通考』 卷18, 征權考.

84) 田汝城, 『南湖遊覽志』 卷20, 21.

85) 全漢昇, 『中國行會制度』, 食貨出版(臺灣), 1978, pp.88-104.

86) 謝肇淛, 『吳雜俎』 卷4, 地部.

고 상업 정책을 개혁하여야 한다면서 그 방안으로 상세를 경감시키고 그에 따른 폐정을 개선하여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sup>87)</sup> 주장한 사실에서 당대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각지의 도시는 상인과 시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경제·정치적으로 세력이 부단히 확대되어 만력말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전국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民變이라고 불리는 이 시민운동은 반봉건적 투쟁으로서 명 말 사회경제의 새로운 변화와 정부의 기존 정책 사이에서 생겨난 마찰의 결과였던 것이다.

---

87) 『工部廠庫須知』卷2, 李洵, 『明清史』, 人民出版社(北京), 1957, pp.109-111에서 再引用.



## 2. 稅役의 銀納化

16-17세기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명 국내의 상품, 화폐경제의 발전에 따라 전국을 무대로 한 장거리 교역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 무역도 크게 번성하였다. 명대의 공적인 대외교역은 조선이나 琉球·월남 등과 정기적으로 행한 조공무역 위주였다. 그러나 절강·복건·광둥 등 중국의 동남해안에는 밀무역이 크게 번성하였고, 일부는 정부의 통제와 탄압을 피해 해적화하였다. 중국과의 공무역이 단절되었던 일본에서는 일부 일본의 상인집단을 중심으로 명의 해상세력과 결탁하여 밀무역을 하거나 중국과 조선의 연안을 약탈, 파괴하는 왜구활동에 나섰다. 16세기는 포르투갈, 에스파냐를 선두로 한 서구 국가가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16세기 후반에는 이 두 국가가 동아시아 무역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런 무역을 통해 일본과 멕시코 등으로부터 신대륙의 銀이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어 은 중심의 부역 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우선 명조의 화폐 제도가 어떤 식으로 정비되어 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 초 홍무원년(1368) 3월에 洪武通寶가 주조되면서 錢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홍무통보는 小錢(1文錢)에서 當十錢(10文錢)까지 대소 5종류가 있었고<sup>88)</sup> 當二 이상의 大錢은 홍무 4년에 폐지, 종래의 동전과 함께 사용되었다. 홍무 원년에는 약 8,9000萬文이 주조되고, 그 후 8년까지 매년 약 2億文 전후가 주조되었다. 이러한 동전의 수치는 북송 시기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것이어서 당시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에 관료들 중에서는 동전의 순도를 떨어뜨려 발행액의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는데<sup>89)</sup>, 이렇게 동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동전의 재료인 銅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원래 銅의 산출이 적은 중국에서는 송대에 성행한 동전 주조에 의해서 銅의 절대량이 감소했으며, 주조된 동전도 다량으로 해외에 유출되었고, 북송을 지나 남송 대에 이르면 산출액도 격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元代를 지나 명 초에 이르면 銅의 부족은 매우 심각하였으며,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함께 동전의 수

88) 『太祖實錄』卷3, 洪武 元年 3月 辛未條.

89) 『太祖實錄』卷66, 洪武 4年 2月 丁卯條.

요가 매년 증가하였지만 그에 부응할 만큼 산출이 뒤따르지 못하자 부득이하게 민간에서 銅을 거뒀는데, 이는 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sup>90)</sup>

더욱이 원 말의 격동기를 지나 국내 질서가 점차 회복되면서, 상공업과 상인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짐에 따라 거래액도 많아졌다. 그러나 동전은 중량이 무거운데 비해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낮았기 때문에 수량이 비교적 많은 교역에 불편하였고, 장거리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운반하기에도 매우 불편하였다.<sup>91)</sup> 따라서 동전을 보조하거나 대신할 새로운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홍무 7년(1374), 寶鈔提舉司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다음해에 大明寶鈔라고 하는 지폐를 발행하였다.

홍무년간부터 선덕년간에 이르기까지 명조는 鈔의 유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간 교역에서 은의 사용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고 이에 대한 벌칙 또한 강화시켜 나갔다. 홍무 8년에는 금과 은을 교역하는 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고발하는 자에게 압수한 은을 상금으로 내리고 있지만, 민간에서 銀一錢이라도 교역에 사용되거나 관리가 銀一兩이라도 뇌물로써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벌금을 본래 가치의 千倍인 鈔萬貫으로 부과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다.<sup>92)</sup>

그 후에도 홍무 30년에 다시 금지령을 내렸고<sup>93)</sup>, 영락원년에는 금지령을 내려 벌칙을 정하고 고발을 장려하였으며,<sup>94)</sup> 다음해에는 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여기는 자는 변방으로 쫓아 보내기까지 하였다.<sup>95)</sup> 선덕년간에도 역시 鈔를 시행시키기 위하여 금과 은의 교역을 금지시키고 금과 은의 사용자는 鈔로서 벌금을 내게 하기도 하였지만,<sup>96)</sup> “民間交易 惟用金銀 鈔滯不行”<sup>97)</sup>이라 하여 명 초부터 시행하여 오던 鈔의 유통 정책이 그 힘을 잃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鈔가 화폐로서 경제상 유통기능의 중심역할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홍무년간에서 정통년간에 이르는 사이에 銀價는 상승하였지만 鈔價는 점차 하락하여

90) 檀上貫, 『明朝專制支配の史的構造』, 汲古書院, 1995, p.119.

91) 李龍潛, 『明清經濟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88, p.92.

92) 『太祖實錄』卷108, 洪武 8年 3月 新西朔條.

93) 『太祖實錄』卷230, 洪武 30年 3月 甲子條.

94) 『明史』卷77, 「食貨志」, 錢鈔條.

95) 『成祖實錄』卷3, 永樂 2年 1月 戊午條.

96) 『宣宗實錄』卷10, 宣德 元年 7月 癸巳條.

97) 『明史』卷77, 「食貨志」, 錢鈔條.

갔던 것이다. 이처럼 鈔를 유통시키기 위하여 鈔의 발행을 꾸준히 늘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긴 하였지만 鈔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띄었고, 반면에 당시로서는 은을 통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현상은 높아가기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통원년(1436)에 田賦折銀令이 내려지게 되어 드디어 田賦에 대한 은납화가 시작되고 동시에 민간교역에 있어서도 은의 유통이 허락되어 朝野의 어디에서든지 은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sup>98)</sup>

전부절납은령이 내리게 된 동기로서는 정부에서의 관료의 봉급문제로 말미암아 折銀이 문제화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都察院右副都御史 周銓과 巡撫江西侍郎 趙新 등이 논한 것으로, 당시 京師는 북경이면서도, 중앙의 관리들에게 지불하여야 할 관봉미의 저장창고는 남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경의 관리가 봉록을 수령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봉급문제를 제기한 것이다.<sup>99)</sup> 말하자면, 세량 창고가 남경에 있기 때문에 남경에 있는 관리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북경의 관리는 봉록을 받기 위해 남경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00)</sup> 따라서 왕복여비를 소비하여야 하고 관봉미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俸米 역시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실해를 거두기 위하여 절강·강서·호광·남직례 등의 지역 가운데서 배로 수송이 불가능한 지방은 토산물인 布綿·白金·白銀을 折收하여 京師에 저장하여 두고서 관원의 봉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자고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관료 봉록 때문에 논의된 折銀문제가 전부절은령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부절은령이 이와 같은 정부의 관료봉급문제를 동기로 하여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통년간 전에 금은교역의 금지하에서 이미 절납으로서의 折銀이 실시되어 왔다는 점과 정부에서 은을 소유하고자 하였던 의지가 전부절은령의 성립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미 국내·외적으로 실질적 경제 여건이 마련되어가고 있었기에 민간에서도 은의 사용 요청이 있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정통년간의 전부절은령은 이전의 임시적인 절납징수에서 벗어나 국가에서 필

98) 同上.

99) 『英宗實錄』卷37, 正統 2年 8月 庚辰條.

100) 『萬曆會典』卷39, 戶部26, 廩錄2, 俸給條.

요로 하는 세량 이외는 田賦를 折銀하여 징수한다는 보다 발전된 성격을 지니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지금부터는 명대 초·중기의 화폐유통을 休寧과 祈門縣을 중심으로 한 徽州<sup>101)</sup>土地賣契帳簿 <(표 1)> 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休寧·祈門縣의 土地賣契狀況(괄호밖의 수치는 休寧縣의 계약상황이고, 괄호안의 수치는 祈門縣의 계약상황임)<sup>102)</sup>

	鈔	稻 穀	綿絹苧	銀	其 他	總 數
1365-1369				1 (1)		1 (1)
1370-1374	(1)			(2)		(3)
1375-1379	(2)			(1)		(3)
1380-1384	(7)					(7)
1385-1389	2 (4)					2 (4)
1390-1394	5 (8)		(1)			5 (8)
1395-1399	4 (5)	7		1		12 (5)
1400-1404	4 (7)	11	(2)	9	1	23 (8)
1405-1409	4 (7)		1			5 (7)
1410-1414	2 (21)		1		1	4 (21)
1415-1419	3 (21)	1	(1)	1		5 (18)
1420-1424	4 (26)	1	3 (2)			8 (28)
1425-1429	(13)	5	8 (3)			13 (16)
1430-1434	(1)	3 (2)	5 (4)	1	(1)	9 (8)
1435-1439	(1)	4 (2)	4 (10)	4 (3)		11 (15)
1440-1444	(1)	1 (1)	(7)	9 (11)		10 (20)
1445-1449		2	1 (4)	8 (11)		9 (15)
1450-1454		(5)	(2)	5 (8)		5 (12)
1455-1459		1		9 (5)		10 (5)
합계	28(126)	36(10)	23(36)	48(42)	2 (1)	132(204)

101) 徽州府는 南直隸 소속으로 歙·休寧·績溪·婺源·黟·祈門의 6縣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북서쪽으로는 黃山山脈, 남쪽으로는 天目山·率山山脈으로 둘러싸여 있는 ‘山間谷地’이고, 錢塘江의 水源인 新安江을 통해서 상업 중심지인 항주에 연결되어 있다. 可耕面積이 적고, 그마다 기름 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부터 상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소위 ‘新安商人’이며, 명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흥성하기 시작했다.

102) 大田由紀夫, 「元末明初期における徽州府下の貨幣動向」, 『史林』 76-4, 1993, pp.7-9 表 1-1; 李敏鎬, 「明代 前期의 通貨政策과 그 性格 -鈔 流通政策과 商稅問題를 中心으로-」, 『東洋學研究』 3, 1997, p.165에서 再引用.

우선 休寧縣 경우, 홍무년간(1368-1398)에는 보초 발행 이전인 홍무 2년(1369)에 은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鈔가 우세하다. 다만 홍무말년부터 건문년간(1395-1402)에는 稻穀과 은이 鈔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락 초까지 계속되지만, 그 이후는 다시 鈔의 유통이 많아지고 있다. 이후 鈔는 영락말년인 1420년경부터 다시 동요하기 시작하여 홍희(1425)·선덕년간(1426-1435)에 들어서면 완전히 도곡과 포백으로 대체되고, 이후 鈔에 의한 토지매매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통 4년(1439) 무렵이 되면 도곡·포백은 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은의 유통과 은납화로 인해 은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국내 생산에 한계가 있던 은을 명조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24년부터 포르투갈 인들은 중국의 동남 연해 지역에서 밀 무역을 시작으로, 1557년에 마카오에 거주 지역을 조성하고 촌락을 건설하였으며 이후에租借라는 수단을 통해 마카오를 든든한 배후 기지로 만들었다. ‘마카오-고아-리스본 노선’으로 이

어지는 무역을 살펴보면, 포르투갈 인들은 중국의 生絲, 비단, 황금, 동, 수은, 사향, 朱砂, 茯苓, 자기 등의 상품을 마카오에서 고아로 운송하였는데, 이 가운데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生絲였다. 생사 수출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명대 방직업의 발달의 결과이며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의 발전을 의미하며 이는 명대 상품경제와 은납화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다.<sup>103)</sup>

한편 고아에서 마카오로 운송되어 오는 상품 가운데에는 백은, 후추, 蘇木, 상아, 檀香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백은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여기서 백은은 멕시코와 페루 산으로, 포르투갈 상인과 스페인 상인이 리스본과 세비야로 가지고 가서 다시 고아로 운송해 간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유럽 상인들은 포르투갈 인들이 리

16~17세기 세계 은의 유통



103) 吳金成, 「明末·清初の 社會變化」, 『講座中國史』 IV, 1989, p.116.

스본으로부터 고아로 가지고 간 백은이 거의 전부 마카오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러한 종류의 무역은 다시 일본의 나가사키로까지 연장되었다. 포르투갈 인들은 마카오를 중심으로 원동 무역에 종사하였으며, 매년 5, 6월 고아에서 기항한 상선은 인도 등지에서 생산된 향료 및 멕시코와 페루 산 백은을 가득 싣고 마카오에 도착하였다. 이듬해 마카오에서 사들인 중국산 생사, 비단제품, 면포 등의 상품을 다시 싣고 그 다음해 다시 일본으로 가서 먼저 히라도, 요코세 포, 후쿠다 항에 정박한 다음 다시 나가사키 항으로 모여들었다. 그곳에서 중국 상품을 판매하여 일본의 백은과 기타 상품으로 교환한 이후 다시 마카오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일본은 백은을 지불하여 중국의 생사, 비단제품, 자기 등을 사들여 삼 년째 가을이 되면서 고아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고아-마카오-나가사키-마키오-고아’의 장거리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거두어 들였다.

이와 같은 세계와의 경제 교역을 통한 은의 유입은 정통원년의 전부절은령 시행 이후 은의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시 銀價에 있어서는 “每鈔貫五百文折米一石 黃金一兩折十石 白金(銀)一兩折四石”<sup>104)</sup>이라고 한바와 같이 銀 一兩을 米 四石에 절납하고 있었다. 이것은 홍무 9년에 “每銀一兩錢一千文紗一貫折輪米一石”<sup>105)</sup>이었던 것과 홍무 30년의 “銀一兩折一石”<sup>106)</sup>이었던 것에 비하면 米價는 점차 하락하고 銀價는 점차 상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명 태조 이래의 米價의 하락은 기타 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만큼 백성의 세량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折銀의 세액에 있어서는 정통이전에는 절납된 은에 대하여 세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전부절은령이 시행되면서부터 세액이 결정되었다. 곧 해마다 米麥四百餘萬石을 절은하여 銀百萬餘兩을 기준하여 세액으로 삼았다. 세액의 백만량 가운데 십만여량 만을 武臣의 봉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御用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징수된 折銀은 이제 남경의 저장창고로 보내지 않고 京師로 수송하여 御倉인

104) 『英宗實錄』 卷8, 正統 元年 8月 庚辰條.

105) 『太祖實錄』 卷110, 洪武 9年 4月 己丑條.

106) 『太祖實錄』 卷230, 洪武 30年 10月 癸未條.

內承運庫에 저축하게 하였다.<sup>107)</sup>

그리고 전부절은령이 실시된 지역은 남직례를 비롯한 강남의 절강·강서·호광·복건·광둥·광서에서 일시에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절은령의 실시 범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일률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점차 확대하여 실시되어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먼저 강남지방에서 田賦의 은납화가 시작된 것은 이 지역이 선덕·정통년간의 경제적인 중심지로서 토지 소유가 집중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sup>108)</sup> 말하자면, 부역의 할당기초가 田土이기 때문에 전토를 대량 소유한 지주는 세량과 요역을 피하기 위하여 관리와 결탁하여 부정을 일삼았고,<sup>109)</sup> 이 부정의 폐해가 표면화되는 곳이 바로 대토지 소유를 형성하고 있던 강남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전부의 변화도 강남지방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해외 중계무역으로 인한 銀의 유입은 국가의 전부 징수대상을 米麥에서 은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따라서 은은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명초의 자연경제는 화폐경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전부의 수취 내용이 은납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납대상이 현물 또는 노동력에서 은으로 전환한 단순한 수취의 형태변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조세 제도의 부분적인 개혁조치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역의 은납화는 관료의 봉급 문제가 동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세계무역시장에서 중국이 중대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발달하면서 은의 유입과 유통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결과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07) 『明史』卷79, 「食貨志」, 倉庫條.

108) 山根辛夫, 「十五·六世紀中國における賦役勞動制の改革」, 『史學雜誌』 60, p.48-49; 金鍾博, 「明代田賦의 銀納化 過程에 관한 考察」, 『史叢』 19, 1986에서 再引用.

109) 『大明律』卷5, 戶律, 田宅欺隱田將條.

## IV. 里甲制의 해체

### 1. 一條鞭法

장거정이 정계에서 활동하던 가정·용경·만력년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상품 생산의 발전이 이루어져 자본주의적 맹아가 나타나는 한편, 지주층에 의한 대토지 소유의 진전과 지주 경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한 정책은 土地丈量이나 一條便法과 같은 요역 징세제도의 개혁이다.

장거정이 실시한 토지장량은 기본적으로 전국의 전토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명 중기 이후 계속된 대지주의 토지겸병과 부역 부담의 극심한 불균등에 따른 국가 재정의 파고를 바로잡고, 세량 징수의 확보 강화에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그가 토지장량을 실시하면서 개혁의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였던 것은 대지주, 특히 토지겸병이 가장 심하였던 강남지역의 지주층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선 당시 국가에서 수취할 수 있는 세원이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강남지역의 토지겸병과 그에 따른 세량 징수의 불균등한 실태를 살펴보겠다. 명 중기 이후 토지겸병의 실태에 대해서는 霍韜가 “王府에게 떼어주거나 猾民에 의해서 欺隱되었다”<sup>110)</sup> 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토지겸병은 위로는 황제로부터 훈척·환관·신사계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sup>111)</sup>

지역적으로는 특히 강남지방에서 심각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토지겸병이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은 지주 세력의 발전과 서민지주 및 자경소농의 몰락, 官田제도의 쇠락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중에서 관전제도의 쇠락은 관전의 私田化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 강남지방 관전 총액의 1/4 이상의 방대한 토지가 사전화되었다. 국초의 명조정권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기초가 되었던 관전은 명조가 지주의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직접 생산자인 경작 농민을 국가의 지배체제 내에 편입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그러나 명조는 정권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주 계층을 전면적으로

110) 『明史』卷77, 「食貨志」, 賦役條.

111) 『明史』卷120, 「食貨志」, 賦役條.



배제할 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과 타협하게 되고 관전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힘을 갖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과 타협하게 되고 관전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지주부농층을 일차적 承佃者로서 관전체제 내에 포함시키는 가운데 그 정책의 수행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중기 이후 지주 부농층이 관전을 사유화함으로써 토지점병의 한 원인이 된 것이다.<sup>112)</sup> 이들은 토지를 점병하여 財富을 축적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를 기피하였다. 즉 그들은 우면 특권을 이용하거나,<sup>113)</sup> 전토 소유액이 세량·요역의 중요한 부과기준으로 설정된 이상, 많은 세량 및 중역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토를 은닉하거나 혹은 타인 명의로 이전해서 가능한 한 자기의 토지 소유액을 속임으로써 세량을 탈면하고 중역을 기피하였으며, 토지매매와 관련해서 지주는 토지등록업무에 관계한 서리층과 결탁하여 세량을 탈면하였다. 이와 같은 지주의 세량탈면과 요역의 기피 현상은 결국 빈농에게 전가되어 부세의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토지점병과 부역의 불균등 현상은 유민과 인구가동을 초래하였으며, 국가 지배하에 편제된 호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써 명정부가 직접 징세할 수 있는 토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니 이것은 곧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장거정은 용경 2년의 ‘陳六事疏’에서,

(관부)외에서는 豪強의 점병, 부역불균·花分·詭寄가 나타나는데 탐욕스러운 자들이 전량을 납입하지 않으므로 이는 소민에게 전가됩니다. (관부)내에서는 관부의 조작과 侵欺冒破가 나타나고 간사한 무리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취하니 이름만 있을 뿐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 아문마다 관의 전량을 태만함으로써 조사하지 않고 공적인 것을 핑계로 利를 취하니 관료와 서리의 폐해가 많습니다. 무릇 이것은 모두 국가의 재부를 줄어들게 하고 민을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 재를 해치는 것을 구하고 제거함에 있어 그것을 곤궁한 민으로부터 찾으니 이는 국가의 원기를 스스로 소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

112) 林金樹, 「明代中後期江南的土地兼併」, 『中國全史』 72 中國明代經濟史, 人民出版社(北京), 1994; 李敏鎬, 「張居正 財政政策의 性格; 財政의 中央執權化와 江南地主層 牽制」, 『東洋史學研究』 50, 1995, p.34에서 再引用.

113) 吳金成, 『中國近世史會經濟史研究』, 一潮閣, 1986, p.195.

니까?<sup>114)</sup>

라고 하여 국가재정 부족의 한 원인으로서 부호가 겸병한 채 세량을 납부하지 않고 이 때문에 소농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과 관료들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豪強의 토지겸병을 억제하고, 부역 불균등의 상황을 정리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內閣首補로서 토지장량을 솔선하여 수행한 장거정의 丈量觀은 만력원년 應天巡撫 宋義望에게 보내는 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대지주는 토지를 7만경이나 가지고 있고, 양은 2만석에 이르고 있는 데도 납세하지 않는다. 지금 侵欺하고 은점한 자는 權豪이지 서민이 아니다. 따라서 내법의 시행 대상은 간사한 사람이지만 양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점을 밝혀낸다면 소농민이 包賠의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 본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sup>115)</sup>

라고 하였으며, 다시 만력 5년경에는 新任의 응천순무 胡執禮에게도 계속해서 均賦에 대한 협력을 구하고 있다.<sup>116)</sup> 장거정은 대지주들에 의한 은전을 찾아내고, 정확히 세를 걷어 들임으로써 소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장거정의 토지장량은 우선 邊鎮의 둔전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이것은 둔전이 붕괴된 상황에서<sup>117)</sup> 변경지대의 원액을 회복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호과급사중 光懋가 제의하여 호부의 찬동을 얻어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만력 4년 섬서 지방의 고원진에서는 둔전의 전토에 토지장량이 실시되었다.<sup>118)</sup> 만력년간의 둔전에 대한 토지장량의 실시 결과 新增地가 많아졌으며, 여기에서의 세량은 국가에 둔량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전과 동일하게 납부하였다.

장거정은 둔전에 대한 장량과 민전화의 효과에 힘입어서 만력 6년 전국적인 토

114) 張居正, 「陳六事疏」, 『張太岳集』 卷36, p.458.

115) 同, 「答應天巡撫宋陽山論均糧足民」, 『張太岳集』 卷26, p.317.

116) 同, 「答應天巡撫胡雅齊言嚴治爲善愛」, 『張太岳集』 卷29, p.375.

117) 『神宗實錄』 卷31, 萬曆 2年 11月 辛未條.

118) 『神宗實錄』 卷47, 萬曆 4年 2月 庚寅條.

지장량을 제안하였는데, 그 상황에 대하여 『明史』, 「食貨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만력 6년, 황제는 대학사 장거정의 의견을 수용하여 천하전무에 丈量을 행하되 3년의 기간을 두어 일을 끝마치도록 하였다.…… 이에 호강지주는 기은할 수 없게 되고, 里甲에서는 包賠의 고통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소민의 허량이 없어졌다. 총 전지 수는 7,013,976경으로 弘治時에 비해 300만경의 잉여가 있었다.<sup>119)</sup>

그리하여 우선 복건순무 耿楚侗이 복건지방의 장량에 대한 재가를 구하는 奏議가 있자, 장거정은 그에게 서신을 통해 복건장량을 허락하였다.<sup>120)</sup> 이로써 만력 6년에서 7년에 걸쳐 복건 지방에 한정해서 실시되었으며, 이어서 7년 4월에는 蘇·松 지방, 같은 해 6월에는 남·북직례·산동·섬서의 각 포정사들에게 장량을 명하였다.<sup>121)</sup> 그리고 8년 9월에는 순무 勞堪에 의해 복건지방의 장량완료가 보고되었다.<sup>122)</sup> 이러한 복건 장량의 성공에 의해 장거정은 같은 輔臣이었던 張四維·申時行, 호부상서 張學顏 등과 더불어 전국 전토의 장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sup>123)</sup> 이어서 장거정의 뜻을 받은 호부는 8개조의 시행대강<sup>124)</sup>을 작성하여 황제의 재가를 얻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장량은 失額, 즉 징수 台帳에 기재된 원액을 충족시키지 못한 전토에만 실시하고, 실액이 나타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 ② 각 포정사에서는 포정사가 총령하고, 分守道·兵備道(모두 지방군의 지휘자)가 分領하며 부·주·현관은 任地를 專管한다.
- ③ 세액분배를 다시 하여 세량과과의 대상인 전토는 官·民屯 별 수량의 구별, 세량액의 상·중·하 등칙의 구별이 있어야 하며, 세밀히 조사하여 詭混됨이 없어

119) 『明史』 卷77, 「食貨志」, 田制條.

120) 張居正, 「答福建巡撫耿楚侗言治術」, 『張太岳集』 卷31, p.380.

121) 『神宗實錄』 卷88, 萬曆7年 6月 辛卯條.

122) 『神宗實錄』 卷104, 萬曆8年 9月 庚辰條.

123) 張居正, 「張太岳行實」, 『張太岳集』 卷47, p.597.

124) 『神宗實錄』 卷106, 萬曆8年 11月 丙子條.

야 한다.

- ④ 원액을 다시 회복한다. 세량은 일반 민호가 둔전지를 경작하고 있으면 둔전의 세량을, 군호가 民地를 경작하고 있으면 민전지의 세량을 납부해야 한다.
- ⑤ 欺隱의 形律을 엄하게 한다. 歷年の 詭占과 개간지를 신고하지 않았던 자도 자수하면 죄를 면제해 주지만, 보고를 부실하게 한 자는 연좌해 처벌하고 豪右로 은점한 자는 중벌에 처한다.
- ⑥ 장량의 기간을 정한다.
- ⑦ 장량계산의 방법을 규정한다.
- ⑧ 장량에 필요한 紙筭供應費를 둔다.

위의 조의에 나타난 장거정의 장량시행에 있어서의 특징은 첫째, 장량이 실액의 전토에만 실시되고 실액이 나타나지 않는 전토에는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장량실시의 최대 중점이 전토의 원액을 회복하려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전토의 종류, 세칙의 구별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자세히 검토하여 그러한 전토에 부과되는 세량의 여러 항목, 여러 과칙의 수를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詭混됨을 없게 한 점이다. 이 점은 장거정이 누누이 강조하였던 서리층에 의한 징세대장 기재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었다. 셋째, 장량이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각 포정사 이하 분수도·병비도와 같은 군지휘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欺隱의 律을 엄격하게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넷째, 장량의 시기·실시방법·경비와 같은 여러 세부 사항에도 유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얼마나 장량을 원활히 실시하고자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토지장량의 성과로는 우선 적지 않은 隱田이 새롭게 파악되었고, 세량 부담의 불균등한 상황을 부분적으로 개혁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장량의 시행 중에 종래의 大畝·小畝로 큰 차이가 있던 畝制를 통일하여 240步를 1畝로 하였는데, 장량 실시 후 각 지방에서 전지면적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무제의 개혁과도 관계가 있다. 무제를 통일함과 동시에 관전과 민전에 부과된 과칙을 일률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이전의 ‘官田過重, 民田過輕’의 불합리한 상태를 개혁하였다. 이로써 관전·민전의 구별이 없어지고, 징수율의 일원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던 것이다.<sup>125)</sup>

예컨대 복건의 汀州府에서는 “만력 6년 장량을 행함에 토지는 상·중·하 三則으로 나누고 관전·민전이 一則으로 科糧되었다. 7년에 일조편법을 행하였다.”<sup>126)</sup>고 하였으니, 이는 田이 상·중·하로 구분되어 있었고, 官田米와 民田米가 하나로서 과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량이 행해졌던 다음해에 일조편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민 일척의 과척 방법은 부역제도를 간소화하는 중요한 진전임과 동시에 전국적인 일조편법의 시행과 상응하는 것이었다. 관·민전 부세의 일척화라고 하는 정책 기초에서 징수율은 일원화되었고, 토지 비옥도의 기준 역시 상·중·하의 3분으로 단순화되었다. 따라서 징수율이 단순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과척의 숫자상에서 예를 들면 절강·紹興府의 가정 26년의 관전 37척, 민전 27척, 합하여 64척<sup>127)</sup>과 비교할 때 현저히 감소한 것이다.

이외에도 장량 결과 魚鱗圖가 거의 전국적으로 작성되고 새로운 징세대장이 완성되었음을 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장량은 自丈, 覆丈의 2단계가 채택되었는데 자장 단계에서 어린도가 만들어졌으며, 만력 9년 즈음에 전국적으로 어린도가 만들어졌다. 또 陸世義의 부역황책을 폐하고 어린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전국적인 어린도의 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sup>128)</sup>

한편 丈量策의 전개와 더불어 징세 대장으로는 명대 부역징수의 기본 대장인 부역황책이 단지 형태화된 具文이 되고 징세 편역에서는 白冊이 사용되었다.<sup>129)</sup> 더욱이 白冊은 實徵文冊, 實徵黃冊으로 칭하여 구체적으로 각 人戶에 대한 부과 대장으로 사용되었다.<sup>130)</sup> 그리고 가정 중엽 이래의 장량책과 관련하여 어린도책 이외에 새로이 歸戶冊이 작성되었는데, 이것은 장거정의 丈量時에는 복건·강서·절강·남직·례·안휘 지방 각지에서 작성되었다.

부역황책의 形骸化에 수반하여 강남지방에서의 황책으로부터 백책 내지 歸戶冊으로의 징세 대장의 변동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조직의 변동을 볼 수는 없지만, 實

125) 樊樹志, 『中國封建土地關係發展史』, 人民出版社, 1988, pp.422-426.

126) 崇禎, 『汀州府志』 卷9, 稅糧.

127) 萬曆, 『紹興府志』 卷14, 田賦 上.

128) 西村元照, 「張居正의 土地丈量」 上·下, 『東洋史研究』 30-1·2, 1971, p.61.

129) 『明史』 卷77, 「食貨志」, 賦役條.

130) 川勝守, 「張居正丈量策의 展開」, 『史學雜誌』 80-3·4, 1971, p.282.

徵冊·歸戶冊의 작성 과정을 검토해 보면 장거정은 우선 전부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역법개혁을 시행하여 체납 전량분을 처분하는 단계를 밟아 일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국가는 실징문책이 작성됨에 따라 일단 안정된 세량 징수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거정에 의한 전국 전토의 측량은 이후의 많은 제도적 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다. 가정년간 수차례 행해졌다가 중지되었던 일조편법을 만력 9년부터 다시 시행하였으니<sup>131)</sup> 장거정에 의한 장량시행 결과 일조편법이 좀 더 용이하게 행해지는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토지장량의 기초 위에서 시행된 일조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sup>132)</sup>

- ① 부역을 합병하는 것으로 각종 요역을 하나로 합쳐 징수하였으니 징세 방법의 번잡함을 간소화시켜 지방 아문의 서리들에 의한 중간착취 등의 농간을 제한할 수 있었다.
- ② 역의 부담방법의 개선이다. 즉 요역에 응하는 자는 반드시 직접 노역에 복역할 필요가 없이 代役銀을 관부에 바치고 관부에서 그 돈으로 사람을 따로 고용하여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 ③ 종래 戶와 人丁 단위로 役銀을 징수하던 방법을 바꾸어 토지를 단위로 징수토록 하였다.
- ④ 민간에서 세금을 걷고 직접 운송하던 방식에서 관에서 걷고 관에서 운송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일조편법의 실행에 있어서 장거정의 공헌은 이미 가정 10년(1531) 어사 傅漢臣의 상소로부터 시작되어,<sup>133)</sup> 절강성과 강소성 일대에서 국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일조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정착시킨데 있다.<sup>134)</sup> 이러한 일조편법의 시행에 의한 부역제도의 개혁은 국가정책으로서 행해진 재정 재건책이었으며, 지주

131) 『明史』卷78, 「食貨志」, 田制條.

132) 李敏鎬, 「張居正 財政政策의 性格; 財政의 中央執權化와 江南地主層 牽制」, 『東洋史學研究』50, 1995, p.59.

133) 『世宗實錄』卷123, 嘉靖 10年 3月 己酉條.

134) 周伯棣, 『中國財政思想史稿』, 福建人民出版社, 1984, pp.315-316.

특히 강남 지주층의 대토지 소유의 전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강남지방에서 특히 심하게 전개되고 있던 지주들의 토지겸병을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세량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일조편법의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의의<sup>135)</sup>를 살펴본다면 첫째, 호구의 유망 현상과 이갑제가 이완되어가는 상황에서 부역 징수형태를 간소화하고, 요역까지도 田賦 속으로 흡수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전농민은 요역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자작농의 토지경작이 비교적 안정화되었다. 동시에 세목의 간소화와 計畝徵收는 세량의 부정행위와 요역과과에 대한 폐단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일조편법의 시행으로 요역이 身役에서 화폐로 전환됨에 따라서 人身이 자유롭게 되어 토지에서 이탈하기가 비교적 쉬워졌다. 이로 인해 도시 수공업에 보다 많은 노동력이 제공되었고, 상인들은 토지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상공업 발전에 일조하였다.

둘째, 일조편법의 시행으로 부역이 은납화된 점인데, 그만큼 명대의 상품경제가 발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조편법이 동남연해지방과 강남일대의 비교적 상품교환이 활발한 지역에서 먼저 추진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남북 간의 사회·경제 발달은 상당히 불균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일조편법의 의한 부역의 은납화는 화폐경제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러나 은납화로 인해 농민들은 생산물을 은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이 손실은 정부의 부패와 더불어 더욱 심각하게 일어난다. 더구나 그 이득은 상인·고리대업자가 얻기 때문에 농민은 이들의 구속을 심하게 받게 되었다.

끝으로 일조편법은 전토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혁임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할 수록 많은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농민과 대토지 소유자 사이에 형평성을 따져 세액에 있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의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조편법의 시행 이후, 만력년간의 3차에 걸친 遼餉의 징수와 승정년간의 剿餉의 징수는 농민에게 더없는 압박이 되어, 결국 명 말 농민폭동이 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135) 金鍾博, 「明代 一條鞭法の 成立過程」, 『史學誌』 15, 1981, pp.18-19.

## 2. 均田均役法

명대의 사회는 이갑제 하에서 비교적 안정을 이루며 유지되었으나, 명 초의 농촌 수공업과 단순상품생산이 명 중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여 상업적 대지주가 출현하고 화폐경제가 발달하였다. 특히 화중·화남지방의 농촌으로 깊숙이 침투한 화폐경제에 의해 세역의 은납화가 추진되었고,<sup>136)</sup> 향신지주가 鄉居地主에서 城居地主로 변화되었으며 지주와 전호관계의 관계가 家僕에서 傭工으로 변질되었다. 또한 전호가 잉여 생산물을 축척함에 따라 전호가 자립하게 되었다.<sup>137)</sup>

한편 定額地代의 보급 및 은을 포함한 화폐를 위주로 한 채무 관계의 형성도 지주·전호관계를 面識이 없는 관행으로 변질시켰고, 이에 편승하여 각지에서는 一田兩主制 및 三主制의 관습도 널리 행해지게 되었다.<sup>138)</sup> 이러한 일련의 사회변동으로 전호의 지위와 능력이 상승하였으며, 기존의 농촌사회 체제가 동요하게 되었고, 결국은 鄧茂七의 난<sup>139)</sup>을 비롯한 각지에서의 항조운동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향촌공동체의 동요가 시작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갑제의 부역 제도는 十段法 및 一條鞭法으로 이행되며, 그 변질을 초래하게 되면서 이노인제와 양장제도 역시 그 기능상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sup>140)</sup> 따라서 경제적 개혁과 더불어 향촌에서도 향촌사회의 불안과 流賊들의 횡행을 막기 위한 상호감시 및 보호와 치안유지를 위한 자위책이 정부의 지원 하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保甲制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명 초에는 향촌 자치조직인 이갑제가 확립되면서 보갑제의 시행이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갑제의 내용을 이미 이갑제가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명 중기 이후 이갑제의 이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갑제 자체가 향촌사회의 질서와 치안문제를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본격적인 보갑제의 논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특히

136) 山小正明, 「賦役制度の研究變革」, 『岩波講座世界歴史』 12, 岩波書店(東京), 1971, p.322.

137) 吳金成, 「日本에 있어서의 中國 明清時代 紳士層研究에 대하여」, 『東亞文化』 15, 1978, pp.7-16.

138) 森正夫, 「明清時代の土地制度」, 『岩波講座世界歴史』 12, 岩波書店(東京) 1969, p.253.

139) 鄧茂七의 亂은 正統13年(1448)부터 다음해에 걸쳐 福建省 延平部 沙縣 二十四都의 總甲인 鄧茂七을 중심으로 副租인 冬牲의 全廢를 지주 측에 주장하며 일으킨 농민반란으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소작 폭동이며, 항조운동의 원형이다.

140) 梁方仲, 「明代十段錦法」, 『梁方仲經濟史論文集』, 中華書局, 1989, p.125.



보갑제는 이노인제가 붕괴되어 가는 명 중기 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大明會典』 정통 2년(1436)의 승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각 지역의 관리들은 유민의 이름과 남자와 여자, 성인과 어린 아이의 丁口를 조사해서 十家를 1甲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서로 保識시키며 각기 그 지역의 이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라. 만약 집단으로 산림 및 호수나 강가에 거주하고 혹은 관가 및 권세의 가문에 투탁해서 숨어 官司에 항거하고 招撫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정범으로 사형에 처하거나 변방의 군인으로 충당하라. 또 里老가 도둑을 알면서도 잡지 않거나 이를 숨기고 고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같은 죄로 다스려라.<sup>141)</sup>

라고 한 것을 보면 이노인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시행시키려 하면서 유민에 대한 대책으로 그 名籍을 조사하고 相互保識시킴으로서 그 연대성을 강화시키고, 한편 향신의 家에 투탁해서 관에 항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家を 1甲으로 편성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조치를 중심으로 각 향촌에서는 나름대로의 10가를 1갑으로 하는 연좌적 연대의식에 근거한 자위적 치안질서 방책이 나타났던 것이다.<sup>142)</sup> 정덕년간 王陽明의 十家牌法 역시 향촌사회의 불안과 流賊들의 횡행을 막기 위한 자위책이었다. 십가패법의 내용을 보면,

소속 府와 縣에 명하여 성 내부의 거주한 민가마다 각각 1牌를 만들어 걸도록 한다. 여기에 호적, 호주, 장정의 다과, 耆宿者의 유무 등을 적어 각 家의 문 위에 걸도록 한다. 그리고 10가를 조직하여 이를 1牌로 하고 각 호의 성명을 나열한다. 매일 1가씩 윤번으로 각 家의 문에 걸려 있는 牌를 보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만약 은닉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10가를 연좌하여 처벌한다.<sup>143)</sup>

141) 『大明會典』 卷19, 戶部6 流民條.

142) 『大明會典』 卷21, 戶部6, 事例, 正統 2年 令.

143) 『陽明全書』 卷16, 別錄8, 公移, 案行各分巡道督十家牌.

라고 하였다. 명칭만 십가패법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타의 보갑법과 다를 바가 없었다.

가정시기에 시행된 보갑제는 기본적으로 정덕시기에 행해진 왕양명의 보갑제를 기반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시행 상황과 구조 및 내용을 보면, 이 시기 나름의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첫째, 가정년간에 들어와 보갑제의 시행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보갑의 편성 면에서 10가로 편성된 갑의 조직 위에 상위 조직으로서 10갑으로 편제된 保의 조직이 보편화되어 간다는 점이다.<sup>144)</sup> 셋째, 보갑의 운용을 향약은 물론 향교, 사창, 향사 등의 조직과 일체화 해서 행했다는 점이다. 넷째, 보갑제가 운영되면서 신사층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 나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무튼 가정시기에 들어와 향촌질서는 더욱 불안정해졌으며, 이에 따라 보갑의 효용성은 더욱 커져갔으며 시행 범위와 조직의 확대 및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된 점을 알 수 있다.<sup>145)</sup>

하지만 이런 보갑제를 통한 사회 안정 대책은 명 말에도 지속되지만 우면을 이용한 남면현상의 만연으로 토지를 이용한 부정이 증가하면서 국가의 지배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융경년간에 이르러서는 소주·송강·가흥 등지에서는 이미 양장이 관호로부터 세량을 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었고, 관호들이 자기들의 토지를 민호의 토지와 구분하기 위하여 관호만의 이갑을 설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sup>146)</sup> 이는 곧 관호들의 민호에 대한 詭寄를 집중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縣에서는 관호는 이미 우면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관호들에게는 더 이상 詭寄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 전개되어 있었다.<sup>147)</sup>

이처럼 官豪들의 免役田이 계속 증가하면서 반대로 그만큼의 承役田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避役者들을 더욱 영세화시켜 종래의 이갑제가 기능하고 있었던 수리사업과 세량징수의 차질이 발생하여 수리의 황폐, 세량의 체납현상 등으로 이어져

144) 鄭若曾, 『江南經略』 卷7, 「見行兵政」; 鄭若曾은 가정년간 왜구의 寇掠을 겪은 후 관부의 시책에 참고가 되도록 강남의 방위와 치안의 상황과 방책을 『江南經略』이라는 저술에 담아 놓고 있다.

145) 宋正洙, 「明末 清初의 鄉村統治制度의 變遷」, 『學林』 5, 1983, pp.9-12.

146) 『嘉興縣啓禎兩朝實錄』, 賦役條.

147) 濱島敦俊, 「明末南直의 蘇松常三府における均田均役法」, 『東洋學報』 57, 1976, pp.301-310.

결국 국가 권력은 세량수취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수취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역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여 일조편법 이후 균전균역법까지 강남델타지역인 남직례, 절강지역에서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는 제도 개선의 방법으로, 먼저 우면의 남면현상을 막기 위하여 『大明會典』에 기록되어 있는 가정 24년의 우면칙례에 근거하여 우면액을 그대로 동결시키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우면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우면액의 변동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였다. 곧 우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제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면 액의 제한을 문제 삼았던 것은 우면액이 고정되어야 그 외의 토지 수에 대해서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변동이 없어야만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여 우면의 제한을 실시함과 동시에 縣을 기본 단위로 하여 縣 내에 있는 우면 액수를 제외한 모든 전토 액수에 대해서는 균전을 실시하고 균전에 근거하여 요역을 균등하게 부담시킨다는 균역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오로지 토지의 무수에만 근거하여 토지 소유자면 누구나 균등하게 이장역이나 양장역의 殘存力役을 부담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시행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갑제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구조적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갑제의 기본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균전균역법의 내용을 보면, 우선 縣단위로 하되 부역의 과과 기준을 오로지 전토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畝數원칙을 적용시켰다. 이에 기준하여 縣 내의 전체 토지 수에서 우면 액수를 뺀 나머지 전토 액수를 해당 縣의 전부터 존재했던 里의 수로 나누면, 그 현에는 몇 개의 里가 존재하며 里마다 동등하게 똑같은 토지 수를 보유하게 되어 1리는 토지 수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명 말의 이갑제의 재편이다. 이렇게 되면 이갑제 내에서 10등분 한, 각 갑의 수와 이갑 간에도 상호 균등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균등적 의미 속에서 一里의 균등한 전토액에 근거하여 균등하게 세량과 요역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명 말의 균등한 방법으로 부역 수취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불균등성을 해소시켜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균전균역법의 우면액에는 이미 이갑정역의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大明會典』의 가정 24년의 우면칙례 속에서는 요역에 대한 우면은 균

요역과 잡역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이갑정역도 우면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아마도 우면의 濫免현상이 전개되어 오는 과정에서 우면 규정에도 없던 이갑정역에 대한 우면 혜택이 확대·실시되었거나 묵인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 같은 현상은 우면 액수가 계속 증가되어 갔음을 반증할 뿐만 아니라 승역전의 감소로 사회적 불안은 날로 증폭되어 갔다는 점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면 액수도 점차 계속 증가되어 갔다는 사실과 함께 균전균역법의 실시 자체가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쨌든 명조는 제도 개혁을 통해 균등한 수취체계의 이념을 실현하여 사회·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면 특혜를 누리고 있던 관료와 신사 계층의 강력한 저항으로 시행상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저항 세력이었던 우면 계층들이 국가의 개혁에 동의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정치적으로 보아 전통적 왕조 권력에 의한 제도 개혁은 대체로 시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명 말의 균전균역법이 시행되는 현실 속에서 파악해보면, 첫째로 균전균역이 실시되는 곳에서 기득권인 관료, 신사 계층은 이미 그만큼의 우면 혜택을 확보해 나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둘째로 신사 계층의 균전균역에 대한 동의는 요역의 불균등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민심이 동요하며, 또한 유망의 증가로 민변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관료, 신사층을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향신지배층의 이권 확보의 극대화에서 오는 사회의 총체적 위기감을 의식했던 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sup>148)</sup>

---

148) 川勝守, 「明末江南における丈量の展開と地主佃戸關係の發展」, 『九州大學東洋史論集』 2, 1974; 小山正明, 「賦役制度の改革」, 『岩波講座世界歴史』 12, 岩波書店(東京), 1971; 金鍾博, 「明末均田均役法과 그 實施背景」, 『東洋史學研究』 43, 1993, pp.24-27에서 再引用.

## V. 맺음말

명대에는 향촌조직으로서 이갑제가 설치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역황책을 편찬하여 세량 징수체계와 요역 징수체계를 확립하였다. 이갑제는 1리를 110戶로 한 戶等原則의 향촌조직으로서 이갑 체제하에서의 명의 부역제도는 전부와 함께 요역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부역의 징수체계는 田賦의 경우에 세량 징수는 토지 구분의 다양한 항목에 따라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량을 결정하였고, 徭役의 경우는 호등 원칙을 적용하여 11호가 10년에 한번씩 이장과 갑수호가 부담하던 이갑정역 이외에 여러 잡역이 있어서 농민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고, 시대가 지날수록 가중되었다. 요역을 할당하는 기준으로는 각 호의 丁數, 세량의 다과, 재산의 유무에 근거하여 上上에서 下下까지인 三等九則으로 차등을 두었고 무거운 역은 상등호가, 가벼운 역은 하등호가 담당하도록 하는 戶等制에 근거하여 할당을 받았다. 그리고 토지제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전과 민전으로 구분하고, 토지마다 토지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등급을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명 중기 이후로 오면서 관전과 민전간의 세량의 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균등화를 위하여 만들었던 호등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농민의 부담은 점차 많아지면서 민의 도망과 세금의 적체현상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명 중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가운데 주목되는 사실은 銀 중심의 화폐경제의 발달이다. 송대에는 동전이 주로 사용되었고, 지폐인 交鈔도 보급되었으며, 원대에도 지폐가 유통되었다. 그러나 원 말의 농민반란으로 현물경제로 돌아갔으며, 명 초에는 세량이나 부역을 현물이나 노동력으로 징수하는 원칙을 세웠다. 명 초의 통화정책은 동전과 지폐, 이 두 가지를 중심 화폐로 사용하였다. 지폐는 大明寶鈔라 하였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 金銀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법령으로 엄중히 금지하였으나 보초의 가격은 점차 하락하였다. 즉, 동전 1千文에 鈔 1貫하던 것이 선덕연간에는 초 1관이 동전 2·3백문으로 가격이 폭락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금령을 어기고 은의 사용이 확대되었으며, 正統元年(1436)에 관료들의 봉급

이 은으로 지급되었던 것을 계기로 정부는 은 경제의 확대에 대응하게 되었고, 결국 조세의 은납을 인정하게 되면서 은화 유통을 국가가 공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세의 은납화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경제적 변화이며 동시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상품생산이 발달한 강남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은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은의 확보가 비교적 쉬웠으나 그렇지 못한 지방에서는 농민이 직접 은화의 확보에 나서야 했다.

따라서 농민은 은을 획득하기 위해서 부업경영과 상품작물의 재배 등 새로운 생산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통화수단으로서 은의 지위가 확립되고 그 사용이 보급되었으나 중국의 은 생산량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을 외국에서 조달하였고, 16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유럽 여러 나라와의 교역으로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은화의 전국적인 보급은 부역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당말 이래 실시되어 오던 양세법에 의하여 夏稅와 秋糧으로 징수하던 쌀·보리·生絲 등 현물세가 선덕연간(1426-1435)부터 전부 은납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요역도 田賦와 같이 처음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은의 보급에 따라 은납화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 정부는 개혁의 방향을 우선 관전과 민전의 차등을 없애는, 말하자면 모든 토지에 대한 균등화를 추진시켰으며, 세량징수에 있어서도 등급제를 인정하지 않고 土地畝數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시켰다. 곧 모든 토지는 무조건 ‘畝數當 세량 얼마’라는 일률적인 적용 방식을 채택하여 징수하려는 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요역의 부문에서는 이미 은납화가 되어버린 요역의 항목들에 대하여 그 항목을 부담하고 있던 각 호가 그만큼의 은을 납부해야 했던 방식에서 각 里内の 은납화된 항목을 통합하여 은납의 총계를 내어 이를 그 이갑 내에 있는 각 호에 공동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이갑정역의 부분과 함께 잡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도화된 均徭法 속에서 나타난 均徭銀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서 요역의 분배 방법은 丁과 糧에 부과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丁에는 ‘丁 1명당 얼마’, 糧으로는 세량을 근거로 하여 ‘1石당 얼마’이라는 방식으로 丁과 糧에 요역을 부과시켰다. 그리고 은납화되지 않은 이갑정역이나 均徭의 實役은 여전히 이갑제와 호등제를 이용해서 부담시킨다는 것이었

다. 결국 세량의 징수는 田土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 수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지고, 요역은 이갑정역과 요역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징수 방법은 모두 丁과 糧에 근거하도록 개선시켜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사 계층의 優免 특권을 이용한 토지 부정의 詭寄현상이 항상 존재하였고, 이갑제 내에도 田糧 및 부역의 불균등이 항상 존재했으며, 또한 里甲들 간에도 不均의 격차가 존재해 왔었다.

이를 개혁해 보고자 하여 명 말기로 가면서 나타났던 것이 嘉靖年間(1522-1566)에 보이는 요역 부분에서의 十段法의 개혁이며, 십단법이라는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 통일적 제도로서 나타난 것이 一條鞭法이다. 이 법의 원형은 가정연간의 일이지만, 隆慶·萬曆年間을 거쳐 각 지방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실시되기 시작하여 곧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일조편법은 복잡한 부역 징수체계를 정비하여 징세의 효율화와 민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 개혁으로, 田賦는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하고, 요역은 인정수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항목을 통합하고 일조화하여 모두 은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一條鞭이 갖는 의미에는 세량 부분에서만 一條, 세량과 역의 통합이라는 一條등의 여러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징수 방법에 있어서는 일률적이며 균등적인 부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일률적 부과방법의 모색이란 세량에서는 이갑제가 원래 가졌던 호수 원칙이나 호등제를 무시하고 오로지 土地畝數에 근거하여 세량을 징수한다는 것이며, 役에 있어서는 丁과 糧에 부과한다는 방식을 고쳐 丁과 田에 직접 부과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1丁당 얼마’, ‘1畝당 얼마’라는 방식으로 개혁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서 이갑제가 가졌던 호수 원칙과 호등제, 토지 등급제 등은 무시되어 이갑제의 성격은 그만큼 약화되어져 갔으며, 한편으로는 세량이나 요역의 부과도 거의 土地畝數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丁과 糧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갑제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일조편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역에 대한 현실적 징수는 여전히 이갑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조편법에 편입되지 않고 실제의 勞役으로 존재하였던 이갑정역과 잡역은 여전히 이갑제에 근거하여 할당되었던 것이다. 은화의 보급과 상품경제의 발달, 그리고 세역의 은납화와 함께 진행되었던 일조편법이었지만 노역은 항상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實役부분의 부담은 여전히 이갑제에 의거하여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제도 개혁에 의해 부담의 균등성, 징수방법의 일률성을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부정행위와 타인에게 세액의 부담을 轉嫁하는 행위는 되풀이 되었고, 잔존한 實役 부분에 대한 할당에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조편법에 이어 均田均役法이 새로운 개혁으로 시도되면서, 점차 이갑제는 해체되어 갔던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史料

- 谷應泰,『明史忌事本末』,商務印書館(臺灣),1988.
- 懷效鋒,『大明律』,遼寧省新華書店,1990.
- 李東陽,『大明會典』,新文豐出版公司.
- 張廷玉,『明史』,中華書局(臺灣),1966.
- 鄭天挺,『明清史資料』,天津人民出版社,1979.
- ,『中國通史古參考資料』,中華書局,1988.
- 黃彰健,『明實錄』,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2. 著書

(國文)

-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講座中國史』IV,知識產業社,1989.
- 吳 晗,『朱元璋傳』,知識產業社,2003.
- 吳金成,『中國近世社會經濟史研究』,一潮閣,1986.
- ,『明末·清初 社會의 照明』,한울아카데미,1990.
- 曹永祿,『中國近世政治史研究』,知識產業社,1989.

(中文)

- 樊樹志,『中國封建土地關係發展史』,人民出版社,1988.
- 李 洵,『明清史』,人民出版社(北京),1957.
- 李龍潛,『明清經濟史』,廣東高等教育出版社,1988.
- 全漢昇,『中國行會制度』,食貨出版(臺灣),1978.
- 周伯棣,『中國財政思想史稿』,福建人民出版社,1984.

許 檀,『明清時期山東商品經濟的發展』,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1998.

(日文)

檀上貫,『明朝專制支配の史的構造』,汲古書院,1995.

賓島敦俊,『明代江南農村社會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1982.

森正夫,『明代江南土地制度の研究』,同朋舍(東京),1988.

山根幸夫,『明代賦役制度の展開』,東京大學出版會,1965.

\_\_\_\_\_,『明代徭役制度の研究』,同朋社(東京),1966.

小山正明,『明清社會經濟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1992.

和田清,『明史食貨志譯註』1,東洋文庫論叢 40,東洋文庫(東京),1957.

### 3. 論文

(國文)

金文基,「明代 江南의 水利環境과 農業의 變化」,『明清史研究』11,1999.

金鍾博,「明代 一條鞭法の 成立過程」,『史學誌』15,1981.

\_\_\_\_\_,「明代 東林黨爭과 그 社會背景」,『東洋史學研究』16,1981.

\_\_\_\_\_,「明代 糧長制의 研究」,『史學誌』16,1982.

\_\_\_\_\_,「明代末期 里甲制의 性格」,『祥明女大論文集』15,1985.

\_\_\_\_\_,「明代 田賦의 銀納化 過程에 관한 考察」,『史叢』19,1986.

\_\_\_\_\_,「明末 均田均役法과 그 實施背景」,『東洋史學研究』43,1993.

\_\_\_\_\_,「明代 賦役制度의 變遷過程과 國家構造」,『人文科學研究』5,1996.

\_\_\_\_\_,「明末 清初期 里甲制의 廢止와 保甲制의 施行」,『中國史研究』19,2002.

金漢植,「明代 里老人制의 研究」,『大邱史學』1,1969.

金仙慄,「明 前期 里甲制 下の 訴訟 處理 -徽州文書を 中心으로-」,『明清史研究』18,2003.

權仁溶,「明末 徽州의 土地丈量과 里甲制」,『東洋史學研究』63,1998.

\_\_\_\_\_,「明代 徽州의 里 編制와 增減」,『明清史研究』13,2000.

- \_\_\_\_\_, 「明末清初 徽州의 役法變化와 里甲制」, 『歷史學報』 169, 2001.
- 朴宗喆, 「明太祖의 教育思想 研究」, 『教育論叢』 2, 1982.
- 朴東憲, 「漢代 農家의 副業生産物과 그 流通에 관한 研究 -小農家庭의 紡織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1995.
- 宋正洙, 「明末 清初의 鄉村統治制度의 變遷」, 『學林』 5, 1983.
- \_\_\_\_\_, 「明 嘉靖時期의 社會狀況과 保甲制의 展開」, 『明清史研究』 24, 2005.
- 梁方仲, 「明代十段錦法」, 『梁方仲經濟史論文集』, 中華書局, 1989.
- 吳金成, 「明末 洞庭湖周邊의 水利開發과 農村社會」, 『歷史學報』 77, 1978.
- \_\_\_\_\_, 「日本에 있어서의 中國 明清時代 紳士層研究에 대하여」, 『東亞文化』 15, 1978.
- \_\_\_\_\_, 「明代 紳士層의 形成過程에 대하여」, 『震檀學報』 48, 1979.
- \_\_\_\_\_, 「明末·清初의 社會變化」, 『講座中國史』 IV, 1989.
- \_\_\_\_\_, 「明·清時代의 國家權力과 紳士」, 『講座中國史』 IV, 1989.
- \_\_\_\_\_, 「明中期의 人口移動과 그 影響; 湖廣地方의 人口流入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137, 1993.
- \_\_\_\_\_, 「國法과 社會관행 -明代의 紳士 優免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197, 2005.
- 元廷植, 「巡撫 許孚遠 明末의 福建社會 -萬曆 22年 福州의 食糧暴動 中心으로-」, 『明清史研究』 5, 1996.
- \_\_\_\_\_, 「明中期 福建의 新縣設置, 運營과 宗族社會」, 『明清史研究』 27, 2007.
- 李啓命, 南成勳, 「北朝의 貴族과 明代의 紳士」, 『歷史學研究』 1, 1987.
- 李敏鎬, 「張居正 財政政策의 性格; 財政의 中央執權化와 江南地主層 牽制」, 『東洋史學研究』 50, 1995.
- \_\_\_\_\_, 「明代 前期의 通貨政策과 그 性格 -鈔流通政策과 商稅問題를 中心으로-」, 『東洋學研究』 3, 1997.
- \_\_\_\_\_, 「明代 鈔關稅의 徵收推移와 性格 變化」, 『中國史研究』 21, 2002.
- 李承局, 「明代 糧長의 設置와 그 性格」, 『慶北史學』 7, 1984.
- 全淳東, 「明太祖 自耕農 育成에 대하여」, 『忠北史學』 5, 1992.

- 鄭炳喆, 「明末·清初 華北에서의 自衛活動과 紳士 -山東·北直隸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43, 1993.
- \_\_\_\_\_, 「明 前·中期 山東의 人口移動과 社會變化」, 『東洋史學研究』 55, 1996.
- \_\_\_\_\_, 「明清時代 山東의 商業 -流通과 市場圈-」, 『明清史研究』 13, 2000.
- 韓智善, 「明末 松江府의 海塘水利와 地方政府」, 『歷史學研究』 29, 2007.

(中文)

- 林金樹, 「明代中後期江南的土地兼併」, 『中國全史』 72 中國明代經濟史, 人民出版社(北京), 1994.
- 張居正, 「答福建巡撫耿楚侗言治術」, 『張太岳集』 卷31.
- \_\_\_\_\_, 「張太岳行實」, 『張太岳集』 卷47.
- 陳冬生, 「明代以來山東植綿業的發展」, 『中國農史』, 1992-3.

(日文)

- 大田由紀夫, 「元末明初期における徽州府下の貨幣動向」, 『史林』 76-4, 1993.
- 賓島敦俊, 「明末南直の蘇松常三府における均田均役法」, 『東洋學報』 57, 1976.
- 山根幸夫, 「明帝國の形成とその發展」, 『世界の歴史』 11, 筑摩書房, 1969.
- 山本進, 「清代華北の市場構造」, 『東洋史研究』 17, 1993.
- 森正夫, 「明清時代の土地制度」, 『岩波講座世界歴史』 12, 岩波書店(東京), 1969.
- 西嶋定生, 「中國初期綿業市場の考察」, 『岩波講座世界歴史』 9, 岩波書店(東京), 1966.
- 小山正明, 「賦役制度の研究變革」, 『岩波講座世界歴史』 12, 岩波書店(東京), 1971.
- 西村元照, 「張居正の土地丈量」上·下, 『東洋史研究』 30-1·2, 1971.
- 川勝守, 「張居正丈量策の展開」, 『史學雜誌』 80-3·4, 1971.
- \_\_\_\_\_, 「明末江南における丈量の展開と地主佃戶關係の發展」, 『九州大學東洋史論集』 2, 1974.
- 鶴見尚弘, 「明代における鄉村支配」, 『岩波講座世界歴史』 12, 岩波書店(東京), 1971.

## 감사의 글

교육대학원에 입학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논문을 쓰는데 지도와 격려해 주신 분들께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지속적인 가르침과 많은 조언을 해주신 최진규 교수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논문을 심사해주신 김성한 교수님, 김경숙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고생한 이준암·한주연 선생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과 일로 바쁘지만 신경써준 조교 전승호 선생과 인문학 연구소 이형돈 선생, 격려해준 친구 경화와 형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부모님과 마지막까지 교정을 봐준 여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대의 끝자락에 뜻 깊은 경험을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어려움이 더 많겠지만 감사의 글을 쓰면서 했던 다짐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손경준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역사교육	학 번	20068059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손 경 준      한문: 孫 庚 準      영문: Son-kyoung-jun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1차 101동 705호				
연락처	010-2899-8059      E-MAIL: ibmson@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명대 상품경제의 발달과 이갑제의 해체 영문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Economy and the Dissolution of Lijiazhi in the Ming Dynast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12 월 일

저작자: 손 경 준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